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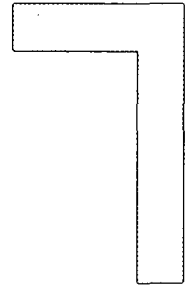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현안분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제조화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현황과 지원제도
 홍콩의 주권반환과 우리의 대응전략

● **특집**

『재정포럼』 창간 1주년

● **정책연구**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외

● **정책흐름**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선 외

● **재정통계**

주세 관련 통계

C O N T E N T S

권두 칼럼		
2	틀린 현실과 맞는 이론	/최 광
연안분석		
6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제조화	/김유찬
24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현황과 지원제도	/김재진
47	홍콩의 주권반환과 우리의 대응전략	/한상국
특집 『재정포럼』 창간 14년		
66	조세·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차병권
71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리더십 발휘를	/박우규
75	『재정포럼』 주제별 총목차 - 창간호(1996년 7월호)~제12호(1997년 6월호)	
정책연구		
82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안종석
86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한상국
정책포럼		
90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선	
87	1997년 4월까지의 국세실적(잠정)	
102	독립공채상환	
10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105	한·EU WTO 주세협정의 결과	
107	199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특례자에게 표준신고율 미적용	
109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	
재정통계		
112	주세 관련 통계	

틀린 현실과 맞는 이론

최 광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오늘날 경제문제의 해결책을 놓고 진행되는 논의를 살펴보면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이론을 무시한 채 수많은 목표를 저돌적으로 추진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도 엄밀한 이론적 분석 없이 정책대안을 서슴없이 개선하기가 일쑤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경제문제의 해결은 제대로 된 경제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놓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배경에 이론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으며 때로는 이론이 아예 필요 없는 양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정책논의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은 학자들이 현실을 모르면서 이론만 얘기한다는 것이다. 이론과 현실이 다를 때 과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릴까? 이론과 현실이 다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맞고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을 얘기하는 학자는 틀렸거나 현실성 없는 궤변

만을 늘어놓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론과 현실이 다를 때 이론이 맞고 현실이 틀리거나 잘못된 경우는 없느냐 하는 것이다.

원래 이론이라는 것이 현실을 관찰하여 추상화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론의 주된 목적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다면 이론은 현실과 괴리될 수 없다. 이론과 현실의 결부는 불가피하며 그러한 결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면 틀린 것은 이론이고 현실은 옳은 것으로 결론짓게 된다. 더욱이 정책논의에 동원되는 이론이 현실의 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현실이 틀리고 잘못된 경우는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 처해 있느냐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만약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현실은 틀린 것이며 틀린 현

경제이론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제대로 된 이론에 따라 정책이 추진될 때 정책의 일관성은 저절로 확보된다. 오늘날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자주 바뀌는 것은 이론이 뒷전에 밀린 채 현실이 정책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수립과 논의에 이론적 측면이 더욱 강조·부각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건의서에 경제이론부문을 필히 넣도록 해보자.

실은 아무리 존재하더라도 고쳐야만 한다.

틀렸기에 고쳐야만 하는 현실이 있다면 틀린 현실에 바탕을 둔 이론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현실이 잘못된 상태라면 현실에 근거한 이론은 잘못된 현실을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

경제이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과 경제이론이 틀리다는 것은 별개의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이론가들이 현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이론이 틀려서라기보다는 경제지식이 제한적이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경제이론가들을 보는 시각과 경제이론가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 경제이론, 특히 제대로 된 경제이론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며 우리 인류의 복지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세계각국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이론이 틀리거나 빈약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올바른 이론들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현실에서 시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 농산물 수입개방, 정부규제 축소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경제이론은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조치로 우리 사회의 생산성과 형평성이 크게 증대되리라는 것은 복잡한 경제이론이 아니라 원론적 수준의 경제이론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원칙과 이론에 충실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밀고 나가면 현실이 이론에 맞게 교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틀린 현실

을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된 이론을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

현실을 많이 알아야 좋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틀린 현실일 경우 오히려 많이 앎으로 해서 정책을 그르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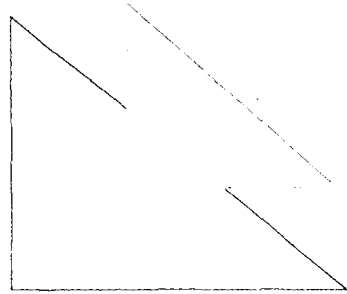
경제이론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제대로 된 이론에 따라 정책이 추진될 때 정책의 일관성은 저절로 확보된다. 오늘날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자주 바뀌는 것은 이론이 뒷전에 밀린 채 현실이 정책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경제현상을 일상의 논리 특히 여론이나 국민정서로 규명·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오류가 발생하고 이 오류 때문에 오늘날 각종 중요한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정책당국자들 전문가든 확고한 이론의 보유자나 이론에 밝은 사람이기보다는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가 대부분이다.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는 설교자, 선동자, 정치가일 뿐 이론가는 아니다. 모든 정책결정자가 뜨거운 가슴을 갖는 것은 중요하나 현실의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수립과 논의에 이론적 측면이 더욱 강조·부각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건의서에 경제이론부문을 필히 넣도록 해보자. 또 앞으로의 정책논의에서는 당해 경제이론의 옳고 그름 여부는 물론 현실의 옳고 그름 여부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겠다. KDI

현안분석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제조화

김 유 찬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현황과 지원제도

김 재 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3. 홍콩의 주권반환과 우리의 대응전략

한 상 국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세제조화



김 유 찬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서론

세제조화는 국가들간의 조세제도상 차이로 인한 장벽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더 일반적인 정의는 재화와 용역, 생산요소의 이동이 과세상의 이유로 더 이상 영향받지 않도록 개별국가들의 조세제도가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세제조화는 유럽의 경제통합과 세제조화에 자극을 받아서 추진되었는데, 수출과 외자유치라는 관점에서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조치들을 시행하게 되었다.

경제통합과 세제조화에 대해서는 1956년에 이미 아시아경제협의회(ECAFE: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의 모임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1961년의 ECAFE 모임에서는 유럽과 유사한 경제통합에 대한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경제통합의 구조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제안으로 그쳤다. 공동시장은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동질성(economic parity)이 결여되어 있거나 수요와 선호도 등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성립되기 어렵다.

그후 TCCC(Taxation and Customs Conference)와 SGATAR(Study Group on Asian Tax

* 이 원고는 Angel Q. Yoingco, "Asia - Pacific : Tax Harmonization - Trends and Patterens, *Asia Pacific Bulletin*, September 1996을 참고로 하였으며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APEC에는 역사·사회·문화면에서 매우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발전면에서도 서로 상이한 수준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이성은 회원국들간에 경제적·정치적 협력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상호보완적인 독특한 분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Administration)와 같은 지역모임이 결성되어 활동중이며, 아시아의 경제협업체 중 큰 역할을 한 것이 1960년 말에 설립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다.

가장 최근에는 1989년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가 출범하였다.

II.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

1. APEC의 경제·정치적 상황

APEC에는 역사·사회·문화면에서 매우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발전면에서도 서로 상이한 수준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이성은 회원국들간에 경제적·정치적 협력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보완적인 독특한 분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분업구조가 각국의 산업화 진전과 함께 상호경쟁 단계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과 일본은 아직 기술과 지식산업에서는 비교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철강, 전자, 기계 등 자본·기술집약적 산업과 서비스분야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추격을 받는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APEC에는 낙관할 수 없는 복잡한 국제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 순조로운 경제적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허다하다. 탈냉전으로 아·태 지역에서 러시아의 오랜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퇴진함에 따라 미국·일본·중국간에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던 미국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에서 심화되고 있는 민족주의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군사력 증강차원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는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계속 남아 있다. 이처럼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아·태 지역은 과연 경제적 협력과 상호의존을 통하여 정치·안보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APEC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APEC 국가들의 경제규모(1995년 기준)

(단위 : 백만명, 10억달러, 달러)

	인구	GNP (자국통화기준)	환율 (평균)	GNP (US달러기준)	1인당 GNP ⁴⁾
전세계	5,716.00			27,687.00	4,843.8
호주	18.05	451.200	0.7450 ⁶⁾	336.14	18,622.7
캐나다	29.61	749.840	1.3652	549.25	18,549.5
칠레	14.20	26,702.000 ²⁾	406.9100	65.62	4,621.1
중국	1,208.80 ¹⁾	4,391.800 ¹⁾	8.4462 ¹⁾	519.97	430.1
홍콩	6.19	1,111.240	7.7320	143.72	23,218.1
인도네시아	193.75	366,295.000	2,308.0000	158.71	819.1
일본	124.96 ¹⁾	473,177.000 ¹⁾	99.7400 ¹⁾	4,744.10	37,964.9
한국	44.45 ¹⁾	348,979.300	771.2800	452.47	10,179.3
말레이시아	19.65 ¹⁾	176.257 ¹⁾	2.5600 ¹⁾	68.85	3,493.6
멕시코	94.78	1,604.367 ²⁾	7.6430 ²⁾	209.91	2,214.7
뉴질랜드	3.54	82.145 ¹⁾	0.6425 ⁶⁾	52.78	14,909.1
피푸아 뉴기니	4.07	4.979 ³⁾	1.0190 ³⁾	4.89	1,201.5
필리핀	68.42	1,970.500	26.2140	75.17	1,098.7
싱가포르	2.99	104.880 ¹⁾	1.4607 ¹⁾	71.80	24,013.4
대만	21.30	6,982.353	27.2650	256.09	12,023.0
태국	60.21	3,559.200 ¹⁾	25.0900 ¹⁾	141.86	2,356.1
미국	263.03	7,237.500		7,237.50	27,515.9
계	2,178.00			15,021.52	6,896.9 ⁵⁾

주 : 1) 1994년 자료 수치임.

2) GDP 자료 수치를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3) 1993년 자료임.

4) US달러로 환산한 GNP를 인구수로 나눈 값임.

5) 1995년의 17개국 GNP를 1995년의 17개국 인구수로 나눈 수치임.

6) US달러/A달러, US달러/NZ달러 환율임.

자료 :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1996. 9.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6.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6.

1992년 세계 총수입시장 중 APEC의 비중은 EU 12개국의 40%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APEC에서의 북미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각각 19%, 20%로 균등한 양상을 보이며 이 중 미국이 14%로서 가장 큰 수입시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은 6%의 비중을 차지한다.

1992년 세계 총수입시장 중 APEC의 비중은 <표 2>에서 보듯이 41%로서 EU 12개국의 40%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APEC에서의 북미 지역(NAFTA)과 동아시아 지역(EA)의 비중은 각각 19%, 20%로 균등한 양상을 보이며 이 중 미국이 14%로서 가장 큰 수입시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은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EU가 10% 포인트 감소한 30% 정도인 반면 APEC은 11% 포인트가 증가한 52%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유럽과 아·태 지역간의 균형이 무너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은 북미 지역보다 7% 포인트 많은 28%로 수입시장 점유율이 EU와 거의 비슷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 중 일본을 제외한 지역의 비중 증가는 7%에 이르러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주요지역별 시장비중 변화

(단위 : %)

	1992	2010	증감
EU	39.63	29.34	-9.79
APEC	41.32	52.08	10.76
NAFTA	19.29	21.29	2.00
미국	14.37	13.13	-1.24
EA	20.65	28.08	7.43
AFTA	5.27	6.75	1.48
NEA	15.38	21.34	5.96
한국	2.12	3.60	1.48
일본	6.06	5.47	-0.59
중국	2.12	3.66	1.54
대만	1.88	2.71	0.83
홍콩	3.21	5.90	2.69

주 : EA는 동아시아지역, NEA는 동북아시아지역을 말함.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2nd Quarter, 1994.

3.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

1992년 우리나라의 대APEC 지역의 수출비중은 70%로 이 중 NAFTA 지역이 28%, AFTA 지역이 11%, 동북아시아는 30%를 차지하여 12%를 차지한 EU의 시장규모에 비해 아·태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 우리나라의 주요지역별 수출입 비중

(단위 : %)

		EU	APEC	NAFTA	AFTA	NEA	기타
수출	1982	13.33	59.13	31.04	6.15	20.21	27.54
	1992	12.35	70.70	27.63	11.47	29.98	16.95
수입	1982	7.25	63.70	27.64	7.86	24.04	29.05
	1992	11.78	62.70	18.57	8.67	31.07	25.52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1984 및 1993.

우리나라의 아·태 지역 수출의존도는 1980년 이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수출의존도의 구조를 세분하여 보면, 대NAFTA 수출의존도의 변화가 미미하였던 반면에 동북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창립국으로 1967년 8월 8일에 조직되었다. 브루나이와 베트남은 1984년, 1995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1. ASEAN 무세거래지역

ASEAN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우대관세제(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하에서 관세율 인하의 두 가지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가. 우선관세율 인하품목(15개 생산품목군 대상)¹⁾

1) 관세율 20%와 그 이하의 품목을 7년 이내에 0~5%로 인하(2000년 1월 1일까지)

1) 시멘트, 화학약품, 의약품, 섬유제품, 펄프, 전자제품, 유리제품, 보석류 등

ASEAN 회원국들은 개별국가별 조세조약 협상을 통하여 ASEAN의 소득과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 철폐를 추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개별 조약규정은 OECD 모델을 따르지만 UN 모델이 개발도상국가의 요구와 조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었다.

2) 관세율 20% 이상의 품목은 10년 이내에 0~5%로 인하(2003년 1월 1일까지)

나. 정상관세율 인하품목

- 1) ASEAN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율 20%와 그 이하 대상품목은 10년 이내에 0~5%로 인하(2003년 1월 1일까지)
- 2) 관세율 20% 이상의 품목은 다음 두 단계로 인하
 - ① 5년에서 8년 동안에 20%로 인하(2001년 1월 1일까지)
 - ② 그후에 합의된 일정에 맞춰 7년 동안 0~5%로 인하(2008년 1월 1일까지)
 관세율의 공통적 인하를 계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ASEAN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일정에 대해 합의하였다.

〈표 4〉 ASEAN 회원국 사이에 합의된 관세율 인하 3단계

(단위 : %)

	관세율
2003	15
2005	10
2007	0~5

2. 조세조약의 조화

ASEAN 회원국들은 개별국가별 조세조약 협상을 통하여 ASEAN의 소득과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 철폐를 추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개별 조약규정은 OECD 모델을 따르지만 UN 모델이 개발도상국가의 요구와 조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었다.

그러나 ASEAN 회원국들은 ASEAN 특유의 환경과 요구에 적합한 조약을 체결할 필요를 느껴 1985년에 '소득에 관한 Intra ASEAN 모델조약(ASEAN 모델)'을 ASEAN의 조세조약의 조화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UN 모델의 입장을 따르고 있지만 ASEAN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하였다.

- ① 지방세와 자본세는 포함하지 않음.
- ② 납세자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기준에서 국적(nationality)을 삭제함.
- ③ PE의 정의를 농장 및 플랜테이션과 목재를 포함한 천연자원의 획득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함.
- ④ 국제운송으로 인한 기업소득은 다른 계약상대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곳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50% 정도 감액되어야 함.
- ⑤ 서비스와 독립적인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상대국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결정 기준은 특별한 조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함.
- ⑥ 전문직업 서비스의 범위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의해 제공된 용역을 포함하기 위해 확대함.
- ⑦ 공공기금, 행정관청, 지방당국에 의해 지원을 받아 방문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계약상대국에서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면세함.
- ⑧ 장학금에 대한 면세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혹은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경우로 제한함.
- ⑨ 정식등록되거나 대학들간의 교환협정에 기인한 교육자와 연구원에 대해 면세함.

ASEAN 모델을 통한 기존 모델조약의 수정은 외국투자로부터의 과세에 대해 더 강한 권한을 ASEAN 정부에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록 ASEAN 모델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 해도 특히 이중과세회피, 소득에 대한 정의와 소득원천의 정의에 대한 규칙과 관행에 있어서 ASEAN 조세조약의 조화에 주요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ASEAN 회원국들의 지침으로 이용되곤 한다.

IV. APEC

1989년에 조직된 APEC의 원회원국은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과 ASEAN 회원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

SGATAR는 각국의 세계상의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아·태 지역 국가들의 필요 때문에 생겨났다. 이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기구와는 달리 형식적인 기구나 현장 혹은 행동지침 등에 관한 구성원칙이 없다는 것이 특색이다.

은 1991년 중국, 홍콩, 대만의 가입과 1993년 파푸아 뉴기니와 멕시코 그리고 1994년 칠레의 가입으로 모두 18개국으로 회원국이 증가하였다.

APEC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 ①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협력적인 해결방안 모색
- ② 개방된 다자간 무역체제 지원
- ③ 무역과 투자 장벽의 지속적인 제거
- ④ 통신과 수송수단의 발전을 이용하여 지역내 경제의 연계와 훈련 및 교육의 개선을 이루고 성장의 혜택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킴.

관세와 투자에 관한 APEC의 합의를 위한 여러 제안 중 과세영역 내의 지역내 협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① PE와 같은 정의의 일관적인 적용
- ② 이전가격과세제도를 포함하여 다국적 기업의 소득과 지출의 할당에 관한 규정의 일관적인 적용
- ③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의 모색
- ④ 납세비 및 징세비 절감을 위한 정보의 효과적인 교환절차

V. 아시아 세무행정연구그룹(SGATAR)

1. 개요

SGATAR는 각국의 세계상의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아·태 지역 국가들의 필요 때문에 생겨났다. 이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기구와는 달리 형식적인 기구나 현장 혹은 행동지침 등에 관한 구성원칙이 없다는 것이 특색이다.

SGATAR는 지역 내에서 세제에 관계된 문제들만 다루는 유일한 기구로서 현재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와 태국의 9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SGATAR는 과세분야의 계획과 경험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1971년 마닐라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래 매년 빠짐없이 연차모임을 갖고 있다. 연차모임은 현실 문제에 대한 토론과 조세제도의 연구 및 개혁에 대한 포럼으로서 이 모임의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비거주자와 과세가 어려운 그룹에 대한 과세문제
- ② 과세기 컴퓨터의 이용 문제
- ③ 조세회피와 탈세문제
- ④ 세무조사기술
- ⑤ 정직한 납세도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
- ⑥ 세무행정상의 개혁

SGATAR 회의에 제출된 개별국가에 관한 보고서에서 세계조화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과 관심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의 일반적인 추세와 관심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소득세는 낮은 세율과 적은 과세구간 위주로 개편되어 왔다. 최저의 초기세율 0%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부과되는 반면 최고의 초기세율 24%는 뉴질랜드에서 부과된다. 일본은 최고의 최고세율 50%로 과세한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자영업자에 대해) 최저의 최고세율 30%로 과세한다.

둘째, 뉴질랜드는 가장 적은 수(두 단계)의 과세구간을 가지는 나라이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필리핀(봉급생활자)에서는 10개 이상의 과세구간을 운용하고 있다. 호주, 일본, 한국, 태국과 필리핀은 (자영업자에 대해) 5개의 과세구간을 가지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3개의 세율구간으로 되어 있다.

셋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나 예외적으로 필리핀은 비거주자가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넷째, 본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분리과세제도(schedular system)를 시행하는 필리핀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종합과세형태(global approach)를 취하고 있으나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부동산소득), 싱가포르(부동산소득)와 태국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이자와 자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종합과세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일정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자나 배당 등의 수동적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세무행정 개선 정도의 비교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5〉 아시아·태평양 일부국가의 개인소득세율과 과세구간(1988~1995)

(단위 : %, 개)

	세율		과세구간 숫자	
	1988	1995	1988	1995
호주	30~60	20~47	6	5
인도네시아	15~35	10~30	3	3
일본	10.5~60	10~50	12	5
한국	6~55	5~45 ¹⁾	16	5
말레이시아	5~40	0~32 ²⁾	9	10 ²⁾
뉴질랜드	15~48	24~33	3	2
필리핀	3~70	0~35 ³⁾	37	10
		3~30 ⁴⁾	37	5
싱가포르	3.5~33	2.5~30	13	14
태국	7~55	5~37	11	5

주 : 1) 1996년부터 10~40%로 개정

2) 1995년에 개정

3) 고정소득근로자

4) 자영업자

자료 : Country Papers.

K. C. Messere, *Tax Policy in OECD Countries: Choices and Conflicts*, Amsterdam: IBFD, 1993, p. 285.
IBFD, *Country Reports*.

소득과 같은 일정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flat rate)로 분리과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자나 배당 등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한 분리과세는 세무행정 개선 정도의 비교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섯째, 한국 72만원, 일본 35만엔, 태국 3만바트 등과 같이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납세자에게 면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필리핀은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기초공제액을 다양하게 변동시키고 있다.

여섯째, 부양아동 수의 추가공제는 제한되고 있는데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3명의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4명의 아동으로, 말레이시아는 5명의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일반적인 형태와 추세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들은 법인소득세율을 낮추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자본 크기에 따라 차별세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법인세율을 소득에 비례하여 차별적용하며, 이들 세 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는 단일법인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국가 중에서 필리핀이 가장 높은 세율 약 30%를 부과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27%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표 6〉 아시아·태평양 일부 국가의 법인세율

(단위 : %)

	이전 세율	현재 세율
호주	단일세율 : 39	단일세율: 33
인도네시아	3개의 세율 : 15, 25, 35	3개의 세율 : 10, 15, 30
일본	2개의 세율 : 30, 42	2개의 세율 : 28, 37.5
한국	2개의 세율 : 20, 30	2개의 세율 : 18, 30
말레이시아	단일세율 : 35	단일세율 : 30
뉴질랜드	단일세율 : 45	단일세율 : 33
필리핀	2개의 세율 : 25, 35	단일세율 : 35
싱가포르	단일세율: 31	단일세율 : 27
태국	2개의 세율 : 35, 45	단일세율 : 30

자료: 「SGATAR 25회 모임보고서」(싱가포르), 1995.

법인세율은 개인에 대한 최고세율로 부과하며,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와 필리핀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과세가능소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수입을 법인소득에 대한 대리과표로 이용하는 데 예를 들면 태국과 필리핀의 항공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례적으로 한국과 태국에는 최저세율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최저세율은 법인에 대해 12%이고 태국은 총과세가능소득의 0.5%이다.

아·태 지역 국가에서의 부가가치세 도입은 단순하고 중립적이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대용세금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었다. 이들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다수의 간접세를 대신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아·태 지역 부가가치세의 세제조화가 가능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개 SGATAR 회원국들 중 호주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서의 부가가치세 도입은 단순하고 중립적이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대용세금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었다. 이들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다수의 간접세를 대신하게 되어 필리핀의 경우 73개 종류의 세율이 다른 판매세가 부가가치세에 의해 대체되었다. 세율은 뉴질랜드가 가장 높은 12.5%인 데 반해 싱가포르의 가장 낮은 3%를 초과한다.

이들 국가의 부가가치세는 자본재를 포함하여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소비형(consumption type)이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재화와 용역의 판매가격이며 국내 생산품과 수입재 모두에 대해 과세된다. 납세액은 세액공제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액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영세율은 수출, 국제운송과 해외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나라들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농산물과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및 의약품, 교육용역이나 인적용역과 주택임대용역과 같은 기본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은 공통적으로 면세한다.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단일한 부가가치세로 인한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6개 국가—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와 태국—에서는 주류와 담배, 석유 및 기타사치재 등의 재화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 7개국과는 달리 SGATAR 회원국 중 호주와 말레이시아는 아직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말레이시아는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는 특정재화에 대해 5~10% 사이에서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는 과세가능 재화를 소매자에게 판매하는 마지막 도매단계에서 적용하는 단일판매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표준세율 20%로 단

단계판매세를 부과하는데 11%(가정용품,우유와 주스 등)에서 45%(자동차) 사이의 6가지 추가적인 세율이 있다. 제조업자는 판매세 등록증을 보임으로써 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세되는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표 7〉 아시아·태평양 국가 부가가치세의 일반특징

	세율	형식	계산방식
인도네시아	10 ¹⁾	소비	세액공제
일본	3 ²⁾	소비	세액공제
한국	10	소비	세액공제
필리핀	10	소비	세액공제
뉴질랜드	12.5	소비	세액공제
싱가포르	3 ³⁾	소비	세액공제
태국	7 ⁴⁾	소비	세액공제

주: 1) 5%까지 감소되거나 15%까지 증가할 수 있음.

2) 1997년 4월 1일부터 5%가 유효함.

3) 1999년 4월 1일까지 이 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4) 6.3%의 국세와 0.7% 지역부가금

자료 : Angel Q. Yoincco, "Asia-Pacific: Tax Harmonization - Trends and Patterns," *Asia Pacific Bulletin*, 1996. 9.

라. 세무행정에 대한 지침

1) 개요

아·태 지역내의 SGATAR 회원국들에서 1980년부터 시작된 세무행정 개혁의 초점은 과세 및 납세에 있어 보다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데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정한 납세자 등록번호의 사용
- ② 전산프로그램의 확대
- ③ 인적자본 개발
- ④ 세무서의 서비스센터로의 전환
- ⑤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취급
- ⑥ 기능분산화
- ⑦ 조세회피(fiscal evasion and avoidance)의 억제

〈표 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와 특별소비세

	면세	특별소비세
인도네시아	농작물, 가축, 일부 기초식품, 미가공 원재료; 서비스 -의료, 은행업, 교육, 호텔, 국제항공수송; 소규모사업자	제조업자 혹은 사치재 수입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부가하여 10%, 20%, 35%와 50% 판매세 부과
일본	금융거래, 공공의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서비스, 임대서비스; 소규모사업자	특별소비세로 분류된 소비에 대한 기타세는 주세, 담배세, 가솔린세와 석유세가 있음.
한국	기초생활 필수서비스; 미가공식품; 사회복지서비스, 인적용역과 금융서비스	특별소비세는 보석류, 진주, 모피, 사치가구 등에 대하여 4가지 부문과 그룹으로 분류하여 부과됨.
필리핀	비식용 농작물, 해당 주에서 나는 해산물과 임산물; 해당 주에서 나는 면과 면종자; 화학비료, 의약, 치과, 병원과 요리서비스, 교육서비스; 소규모사업자	몇몇 재화에 대해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주류, 담배, 자동차와 사치재)
뉴질랜드	GST로부터 면세되는 품목은 극히 일부임. 주택임대, 금융서비스, 귀금속의 공급이 이에 해당됨. 1년당 3만NZ달러보다 적게 생산하는 개인은 비과세	특별소비세 없음. 지방정부는 석유세를 부과함.
싱가포르	주거자산의 임대와 판매, 일부 금융서비스	기타 특별소비세는 유흥세, 필름세(film hire duty), 호텔세, 주류에 대한 소비세가 있음.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항임. 수입세는 극히 일부항목(주로 수입주류, 담배, 석유제품)에 부과됨.
태국	미가공농작물, 화학비료, 건축사료와 살충제와 같은 농장수입품; 신문, 잡지, 교재; 교육서비스,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인적용역	특별사업세는 부가가치세 부과범위 밖의 거래에 총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됨. 예를 들면 금융사업 3%,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 부동산판매 3%

자료 : Angel Q. Yoinco, "Asia-Pacific: Tax Harmonization - Trends and Patterns," *Asia Pacific Bulletin*, 1996. 9.

2) 납세자 등록번호 이용

모든 과세거래에 대한 일정한 납세자 등록번호의 사용은 세무서가 착수한 컴퓨터화를 보완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의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다. 또 필리핀은 5년 이내에 완전하게 가동될 수 있는 야심적인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금납입과 위법사실에 대해 모니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소득과 판매액 신고를 낮게 하는 납세자나 무신고자의 구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선거인명부, 전화번호부, 사업명과 소유자의 목록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상호대사(cross-check)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4) 인적자본 개발

정세인력의 실적을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표준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데 이는 목표설정, 실적향상을 위한 척도의 도입을 촉진한다.

또한 개별국가들에서는 고도의 인력개발 노력이 경주되고 있어 이를 위해 최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일본과 한국에 이미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인력개발기관을 설치하였다.

5) 세무서의 서비스센터로의 전환

친절한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세무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에 발맞추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읽기 쉽고 매력적인 세무신고서 형태를 새로 고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금에 대한 팸플릿과 전단을 포함하는 tax packs를 제공하며 납세자들을 고객으로 간주하여 이들과의 자문회의를 정규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세무서가 충분히 납세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과세정보와 상담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화된 전화기술을 개발중이다.

말레이시아는 세무공무원이 쇼핑 몰(shopping mall)에 설치된 서비스카운터를 통해 일반에게 더 근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대규모 납세자 과세

세무행정에 있어 비용편익 분석의 원칙을 보다 더 의식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납세자들에 대한 과세개선이 일반화되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과세시행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조세회피자에 대한 벌금, 민사와 형사상의 처벌과 재산압류 강화 등의 강제규정만으로 증가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SGATAR 회원국들은 세무행정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7) 기능 분산화

과세조직상 운영의 능률화뿐만 아니라 숙선수범하며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선 세무서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많은 국가들에서는 지역세무서에 예산, 담당부서 직원의 고용 및 승진과 급여 패키지 결정에 대해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분산화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개혁이라는 사실은 흥미 있는 일이다.

8) 조세회피 통제

SGATAR의 여러 모임에서는 조세회피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논의되어 왔다. 여기에는 조세회피자에 대한 기존의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들에 대한 벌금, 민사와 형사상의 처벌과 재산압류의 강화 등이다.

과세압류권(tax liens), 채권압류통고(garnishment), 계좌동결(freezing of accounts)과 같은 강제납부방식(compulsory payment methods)의 적극적인 시행은 체납계좌(delinquent account)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한다. 또 과세당국에 대해 납세자의 계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규정만으로는 증가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개발은 조세회피를 축소하기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VI. 평가

아·태 지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형태나 경향을 살펴보면 아직 세제조화에 근접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이며 그 과정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관세분야에서 이루어진 내용의 수준에도 훨씬 미달한다.

납세의식을 좀더 제고시키기 위해 많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조세회피는 낮은 납세윤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협조적인 태도는 납세순응도 개선의 적절한 척도로 인식

되고 있다.

아·태 지역의 조세와 관련한 정보는 조세개혁뿐만 아니라 투자계획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개혁안을 논의할 때 의원들은 항상 다른 국가들의 관행을 조사한다. 이는 필리핀이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관행을 표준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관행과 조세제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국가들은 인접국가의 조세제도 발전에 공동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SGATAR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몇 가지 세무행정상의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침들은 제한된 범위의 세제조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9〉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세수규모 비중

	총세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기타 세	비고 (단위, 환율, 연도)
호주	104,895 (100.0)	18,194 (17.3)	54,635 (52.1)	11,624 (11.1)	12,679 (12.1)	7,763 (7.4)	100만호주달러, 1A달러=0.7450US달러(1995)
인도네시아 ¹⁾	62,338 (100.0)	26,365 (42.3)	5,657 (9.1)	18,335 (29.4)	3,153 (5.1)	8,828 (14.2)	10억루피아, 1달러=2,200.0(1994)
말레이시아 ¹⁾	44,095 (100.0)	13,844 (31.4)	6,203 (14.1)	4,868 (11.0)	5,280 (12.0)	13,900 (31.5)	100만링지트, 1달러=2.5420(1995)
일본 ¹⁾	83,848 (100.0)	12,429 (14.8)	23,686 (28.2)	6,983 (8.3)	6,148 (7.3)	34,602 ²⁾ (41.3)	10억엔, 1달러=111.85(1993)
한국	62,209 (100.0)	8,663 (13.9)	13,618 (21.9)	14,637 (23.9)	7,813 (12.6)	17,478 (28.1)	10억원, 1달러=774.70(1995)
필리핀	271,305 (100.0)	38,695 (14.3)	37,370 (13.8)	26,833 (9.9)	39,594 (14.6)	128,813 ³⁾ (47.5)	100만페소, 1달러=24.418(1994)
뉴질랜드 ¹⁾	29,895 (100.0)	3,815 (12.8)	14,445 (48.3)	6,786 (22.7)	1,856 (6.2)	2,993 (10.0)	100만뉴질랜드달러, 1달러 = 1.5307(1995)
태국 ¹⁾	709,785 (100.0)	155,559 (21.9)	83,091 (11.7)	142,022 (20.0)	153,798 (21.7)	175,315 (24.7)	100만바트, 1달러=25.190(1995)

주: 1) 이들 국가의 세수는 잠정치임.

2) 기타 세수 중 사회보장각출금이 31.5%를 차지함.

3) 기타 세수 중 관세비중이 28.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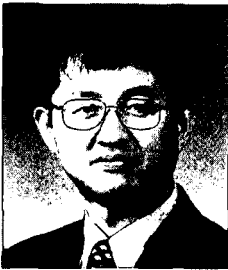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1996.

_____,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6.

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조세제도의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아·태 지역의 조세와 관련한 정보는 조세개혁뿐만 아니라 투자계획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결국 모든 국가들은 인접국가의 조세제도 발전에 공동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① 세무감사기술을 연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담당부서 직원의 트레이닝
- ② 신고서 처리자료의 증가에 따른 납세자자료의 전산화
- ③ 소득과세정보의 상호대사를 위한 강화된 노력
- ④ 원천징수제도의 범위 확대
- ⑤ 청산제도(tax clearance system)의 사용증가
- ⑥ 행정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관점에서 과세당국의 개편과 기능 분산화
- ⑦ 좀더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일정한 지침(indicators) 사용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현황과 지원제도



김 재 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서론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 기능의 대체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유연한 생산체제를 요구하는 범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를 비롯한 사회각층에서 벤처산업의 육성을 통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벤처산업은 크게 투자자, 벤처캐피탈회사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벤처캐피탈회사는 장래가 유망한 벤처기업을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선별하여 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겪는 사업초기단계에 직접자본 참여를 통하여 위험을 공동분담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올바른 육성은 벤처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현황과 지원책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캐피탈회사는 벤처기업을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선별하여 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사업초기단계에 직접자본 참여를 통하여 위험을 공동분담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인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II.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1. 미국

미국은 벤처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로서 미국내 벤처산업은 고용, 투자 및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Coopers & Lybrand사의 조사에 따르면 1996년에 2,163개의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들이 총 101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95년의 1,543개사, 66억달러에 비하여 건수면에서 40% 포인트, 금액면에서 53%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에도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약 3~4만개의 벤처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 현황

미국의 벤처캐피탈회사는 공적 벤처캐피탈회사인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로 크게 구분되며, 1996년 현재 전자는 약 250개, 후자는 600여개 업체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1〉은 미국 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 및 투자규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0년대 들어 약간 위축되었다가 1992년 다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말 주식시장 및 경기침체에 기인하는 것이며, 1991년 이후에는 벤처기업의 공개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의 재원구성은 1992년의 경우 연금이 42%로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1994년 43%, 1996년 41% 등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표 1〉 미국 벤처캐피탈의 규모 추이

(단위 : 건, 백만달러)

	조달금액	투자금액	벤처캐피탈이 지원한 기업공개	
			건수	금액
1980	700	1,100	27	420.5
1983	4,500	2,800	121	3,031.0
1984	4,200	3,000	53	743.1
1985	3,300	2,600	47	843.3
1986	4,500	2,900	98	2,128.2
1987	4,900	3,800	81	1,839.5
1988	2,100	3,261	36	788.5
1989	2,200	N.A.	39	996.0
1990	1,847	N.A.	42	1,184.4
1991	1,271	N.A.	121	3,833.0
1992	2,548	N.A.	151	4,420.3

자료 : 이덕훈 외, 『창업지원금융제도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6.

벤처캐피탈의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1995년 말 현재 정보산업분야가 34억달러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전 및 의약공학분야가 24.5%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한편 벤처캐피탈의 투자수익률은 1990년대 초반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벤처캐피탈이 다시 금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나. 벤처캐피탈 지원제도

미국의 벤처캐피탈 지원책으로는 1953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따라 신설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을 통한 지원제도와 자본소득세를 인하를 통한 유휴자금 유인책, 연금·기금(pension funds)의 벤처캐피탈투자 허용조치,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1) 중소기업청에 의한 지원정책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53년에 중소기업청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자금지원, 경영관리지원, 출판사업 등이다. 먼저 자금지원을 위한 조치들로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설립에 의한 지원, 채무보증 및 소액융자 등이 있다. 경영관리지원은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미국의 벤처캐피탈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원제도와 자본소득세를 인하를 통한 유휴자금 유인책, 연금·기금의 벤처캐피탈투자 허용조치,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표 2〉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산업 분야(1995년)

(단위 : 억달러, %)

	금 액	비 율
정보산업분야	34	45.5
유전 및 의약공학분야	18	24.5
기타	22	30.0
계	74	100

자료 : 홍성도,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본부, 1997.

〈표 3〉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수익률

(단위 : %)

	1969~1980	1981~1990	1991~1995
창업 및 초기	29.5	11.4	29.6
개발	16.6	11.4	21.5
후기	N.A.	16.2	29.6
총계	21.4	11.9	26.4

자료 : 홍성도,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본부, 1997.

Executive), 중소기업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SCORE는 퇴직한 경영자가 무보수로 경영자문을 하는 제도로서 약 1만 3천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개발센터는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경리, 마케팅, 경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 중소기업투자회사

중소기업투자회사(이하 SBIC)는 1958년도에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받은 벤처캐피탈회사를 지칭한다. 이 SBIC는 신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장기유자를 목적으로 하는데, 정부보증채권의 발행 등에 의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공적 벤처캐피탈회사로 불리고 있다.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의 각종 지원을 통하여 민간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소규모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971년 이후 특별중소기업 투자회사(Special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SBIC)를 설립하여 보다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자회사제도가 실시된 이후 1994년까지 SBIC는 약 8만 4천건에 1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SSBIC는 1만 9천건에 16억달러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SBIR 제도

이는 첨단기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로써 1982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Act)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연구개발지출이 있는 정부기관이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11개의 연방정부기관이 자금출연대상으로 되어 있다. 1991년까지는 각 기관의 연간 연구개발예산의 1.25%를 중소기업이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1992년에 1.5%, 1996년부터는 2.5%로 인상되었다.

2) 자본이득세율의 인하

자본이득세율의 조정은 벤처캐피탈에 대한 자금유입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9년부터 1976년까지의 조세법 개정으로 일반급여(payload compensation)에 대한 최고세율은 70%에서 50%로 인하된 반면 자본이득세율은 25%에서 49%로 크게 인상됨에 따라 위험 부담이 높은 투자에 대한 투자유인이 제거되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급속하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1978년 법인소득세법(Revenue Act)과 1981년의 경제재건조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을 통하여 자본이득세율이 49%에서 20%로 하락하자 1980년대 벤처캐피탈이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연금·기금의 벤처캐피탈 투자허용

연금·기금은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의 가장 큰 자금원이 되고 있는데, 1974년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은 연금·기금의 투자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 1970년대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크게 위축되게 되었다. 그러나 1979년 노동부에 의한 규정의 완화는 자본이득세율의 인하와 더불어 1980년대 벤처캐피탈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세율의 조정은 벤처캐피탈에 대한 자금유입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8년 법인소득세법, 1981년의 경제재건조세법을 통하여 자본이득세율이 하락하자 1980년대 벤처캐피탈이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4) NASDAQ 등록기준의 완화

1971년 12월 미국의 주식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 OTC)에 최초로 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즉 장외주의 호가 자동통보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이 NASDAQ 시장은, 개설 당시부터 운영되어 오던 Small Cap(NASDAQ/Small Cap)이 1982년 거래소시장과 연결된 전국적인 시장제도(National Market System: NASDAQ/NMS)의 도입으로 이원화되고 등록기준 및 거래제도가 정비되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장의 상장요건은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나 미국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AMEX 혹은 ASE)보다 순자산이나 세전순이익 등에서 완화되어 있고, NASDAQ 시장 내에서도 NASDAQ/Small Cap의 상장요건이 NASDAQ/NMS보다 더욱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벤처캐피탈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영국

영국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1994년 영국은 유럽에서 투자건수로는 34%를, 금액으로는 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억파운드 이상이 1,200여 기업에 투자되었는데 이는 1993년에 비해 43%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영국은 1979년 「중기자금조달전략(Medium Term Financial Strategy)」을 수립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간기업에 대해 최적의 경제활동여건을 제공하는 데 두고, 본격적으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가. 현황

〈표 4〉는 영국 벤처캐피탈의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979년에는 벤처캐피탈회사 수가 17개사에 자금운용 규모가 2천만파운드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에는 124개사로 증가하였고

벤처캐피탈펀드의 수도 150여개에 총투자규모가 17억파운드에 달하였다. 1990년부터는 영국 경제의 침체에 따라 벤처캐피탈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영국의 벤처캐피탈은 크게 각종 연·기금, 보험회사, Merchant Bank, 상업은행 등 기존 금융 기관의 계열사형태로 설립된 '계열사(captive institution)'와 독자적으로 설립되는 '독립계(independent institution)'로 나뉜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계열사들이 벤처캐피탈의 자금조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독립계 벤처캐피탈회사들이 주요한 자금공급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재원구성에 있어서는 연·기금의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가장 큰 자금원이다.

영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영국의 벤처캐피탈회사들은 1983년 이래 총 140억파운드를 1

〈표 4〉 영국의 벤처캐피탈산업 개관

(단위 : 개사, 억파운드)

	1979 이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9	1990	1991	1992
회사수 ¹⁾	17	23	42	52	69	80	90	107	124	122	115	119	114
총투자액	-	(6)	(19)	(10)	(17)	(11)	(10)	(17)	(17)	(-2)	(-7)	(4)	(-1)
독립계 자금	0.1	0.1	1.2	1.2	1.6	2.3	6.8	6.1	-	-	6.2	5.7	9.0

주 : 1) 1983년 이후는 영국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수이며, () 안은 순증가회사수임.
 자료 : 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 *Report on Investment Activity*, 각 연도.

〈표 5〉 영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개관

(단위 : 개사, 백만파운드, %)

	1987	1988	1989	1990	1990	1991	1992
총투자회사수	1,298	1,527	1,569	1,559	1,297	1,202	1,208
총투자액	1,029	1,394	1,647	1,394	1,434	1,422	2,074
대GNP 비율	0.234	0.297	0.323	-	-	-	-
1985년부터의 누계	1,780	3,174	4,821	6,215	8,802	10,224	12,298
투자건수	1,886	2,093	2,234	2,200	-	-	-

자료 : 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 *Report on Investment Activity*, 1994.

영국의 벤처캐피탈은 크게 각종 연·기금, 보험회사, Merchant Bank, 상업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계열사형태로 설립된 '계열사'와 독자적으로 설립되는 '독립계'로 나뉜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계열사들이 자금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독립계가 주요한 자금공급원으로 등장하였다.

만 4천여 기업들에 대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84년의 1억 9천만파운드에서 1994년에는 21억파운드로 급증하였고, 1995년의 경우 1,163개 기업에 대해 25억파운드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업종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서비스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업체수 기준으로 45%, 금액 기준으로 59%를 점유하였으며, 소프트웨어(15%), 엔지니어링(13%), 레저산업(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단계별 투자현황을 보면, 사업확장단계에 대한 투자가 31%를 차지하여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벤처캐피탈 지원제도

영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정부시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1981년의 기업창업지원제도(Business Start-up Scheme; BSS)와 1983년에 이를 확대·개편한 기업확장지원제도(Business Expansion Scheme; BES)이며, 1994년에 기업 투자자금지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와 벤처캐피탈 신탁회사(Venture Capital Trust)를 신설하였고, 1996년에는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제도와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enture Capital Investment Trust; VCIT)제도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 기업창업지원제도와 기업확장지원제도

BSS는 설립 5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하여 대폭적인 세금감면을 허용하는 것이고, BES는 이를 보다 완화하여 개인이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신주인수에 의한 투자를 행할 경우 감세조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전문 벤처캐피탈회사들은 이 시책에 따라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로부터 BES기금을 조성하여 투자대상기업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영국의 독립계 벤처캐피탈회사에 의해 조달된 총자금은 3억 4,500만파운드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조성된 BSS기금이 5,500만파운드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BES기금은 1981년 도입 초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1980

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88년에는 2%에 불과하였다.

2) 벤처캐피탈 신탁회사

벤처캐피탈 신탁회사는 경험이 부족하고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1994년 4월 1일 설립되었는데, 이는 보험회사나 투자금융회사 등이 관리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펀드회사가 투자대상기업을 결정하고 개인들은 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이 회사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기업투자자금지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동시에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많은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공급하게 되었으며, 적용대상 기업은 연간 100만파운드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

3) 벤처캐피탈 투자신탁제도

영국정부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탈 투자신탁회사인 VCIT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VCIT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줄 예정이며, VCIT의 투자대상은 총자산이 1천만파운드 이하인 비상장주식(대체투자시장의 상장주식도 포함)이다. 이 제도에 의한 투자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투자는 투자신탁의 구성 후 3년간 유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4) 장외시장

영국에서는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자본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용이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0년 11월 비상장주식시장(unlisted securities market: USM)이 창설되었다. USM에서는 설립된 지 3년 이상(상장기업은 5년 이상)된 기업(기술개발관련 기업 등의 경우는 3년 미만도 인정하고 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증명 대신에 재무제표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상장수속 및 상장관리비용 등을 대폭 완화하였다.

한편 USM이 폐지된 뒤 1995년 6월부터는 대체투자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이 개설되었는데 1997년 현재 271개사가 등록하고 있고 이 중 벤처기업은 31개사이다. AIM시장은 제1부 시장(official list)이나 USM에 비하여 상장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특별한 정량적 기준은 없고 단지 사업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장에서는 주식의 소유분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자유로운 주식이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장회사의

비즈니스 링크는 신설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구개발형 기업이나 신설기업이 기업경영상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80%가 자본금 3천만파운드 이하인 기업들로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연간거래량은 2,024억 5,400만주로 런던거래소 거래량의 0.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액으로는 19억 4,400만파운드로 0.07%를 차지하고 있다.

5) 기업투자자금지원제도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지원제도는 1994년 1월 1일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지원과 개인출자자들에 대한 조세유인의 제공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국세청의 심사 및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00만파운드의 한도 내에서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 개인출자자에 대해서도 최대 10만파운드의 투자분까지 주식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개인출자자가 소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33%의 자본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개인출자자에 대해 투자한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6) 비즈니스 링크제도

비즈니스 링크는 신설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구개발형 기업이나 신설기업이 기업경영상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1996년 현재 약 80개사에 이르고 있고 향후 200여개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즈니스 링크의 주된 기능은 정부의 각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중소기업가가 정부의 지원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에 설치된 비즈니스 링크는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서의 작성, 수출, 금융, 기술 등 각 방면에 걸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3. 캐나다

1995년 캐나다 개발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벤처캐피탈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의 성과는 경제전체 및 대기업의 성과를 능가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 캐나다 전체의 고용증가가 3%이고 100대 기업의 고용이 매년 1%씩 감소하였는 데 반하여, 벤처기업의 총고용은 30%가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 투자지출이 연간 40%, 수출이 36%, 조세납부가 35%, 자산축적이 31%, 설비투자지출이 39%로 증가하였다. 조사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이 기술집약적 기업이었으며, 지난 5년간 연구개발에 7억 8,800만 캐나다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현황

캐나다의 벤처캐피탈 규모는 1980년의 3억 5천만캐나다달러에서 1990년에는 33억캐나다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1987년~1992년 사이에 창업된 260개사의 대부분에 투자하였다(〈표 6〉 참조). 이 기간에 벤처캐피탈은 이들 기업에 대해 새로운 직업창출의 40%, 연구개발투자의 46%, 세후이익의 59% 정도를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의 벤처캐피탈회사는 독립적인 전문기금, 법인 벤처캐피탈기금, 투자은행 및 제도은행 권 등의 '민간기금' 과 '정부기금' 그리고 정부로부터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받지만 경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혼합형 기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1980대 미국 벤처캐피탈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연금은 독립적인 벤처캐피탈회사들에 대한 주요한 자금원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예상수익률의 저하로 인하여 연금 및 보험회사가 대거 시장에서 탈퇴하였고, 소규모 투자가를 겨냥한 조세유인정책의 도입으로 혼합형 기금이 새로운 자금원으로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의 후원으로

〈표 6〉 캐나다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장추이

(단위 : 백만캐나다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관리 자본	348	448	578	1,038	1,187	1,388	1,810	2,425	3,082	3,294	3,307	3,220	3,272	4,013	4,958

자료 : The Association of Canadian Venture Capital Companies, "Venture Capital in Canada," Annual Statistical Review and Directory, 1995.

캐나다의 벤처캐피탈회사는 독립적인 전문기금, 법인 벤처캐피탈기금, 투자은행 및 제도은행권 등의 '민간기금'과 '정부기금' 그리고 정부로부터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받지만 경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혼합형 기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설립된 LSVCC(Labour-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이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 1991년의 경우 혼합형 기금의 벤처캐피탈이 전체 관리자본(capital under management)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5년 1월 현재 17개의 LSVCC기금이 존재하고 있다.

<표 7>와 <표 8>은 캐나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유형 및 투자단계에 따른 지원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캐나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유형

(단위 : 건, %, 백만캐나다달러)

	1993				1994			
	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후속투자	132	39	117	29	177	43	150	33
신규투자	209	61	282	71	232	57	309	67

자료 : The Association of Canadian Venture Capital Companies, MacDonald & Associates Ltd., 1995.

<표 8> 캐나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단계별 지원현황

(단위 : %)

기업 성장단계	1993			1994		
	투자건수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초기단계	35	36	29	36	36	25
확장	35	35	39	51	50	56
인수·합병	6	6	10	5	5	8
전환점	7	7	9	6	6	8
기타	17	16	13	1	2	2

자료 : The Association of Canadian Venture Capital Companies, MacDonald & Associates Ltd., 1995.

벤처캐피탈투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투자의 비중은 1980년의 25%에서 1984년의 50%로 증가하였다가 1989년에는 이들 기업의 수익률 감소로 인하여 26%로 약간 둔화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4년 59%로 증가하였다.

나. 벤처캐피탈 지원제도

캐나다 정부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1993년에 조성된 7억 8천만캐나다달러의 75%가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정부의 벤처캐피탈 지원활동은 주로 개인투자자의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조세감면조치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기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주의 지방정부들도 LSVCC를 통하여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1)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혜택

벤처캐피탈이나 첨단기술 보유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조세유인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대하여 평생동안 50만캐나다달러까지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주로 그들의 투자를 회수할 때 자본이득의 형태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이른바 비공식 개인투자자(business angel)들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현행 캐나다의 조세법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자본손실이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채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 손실액의 75%까지 여타 소득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 공적 벤처기금

캐나다 정부 및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보유기업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적 벤처기금을 설립하여 왔다.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 개발은행인바, 이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부소유 은행으로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경영조언과 교육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벤처기금으로서 퀘벡 주정부가 운영하는 Soquia(1975년 설립)와 Innovatech(1992년), 온타리오주의 Innovation Ontario Corporation(1986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Discovery Enterprise Inc.(1979년)와 BC Focus Initiative(1993년), 앨버타주의 Alberta Opportunity Company(1972년) 등이 있다.

캐나다 정부의 벤처캐피탈 지원활동은 개인투자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감면조치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기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정부들도 LSVCC를 통하여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3) LSVCC에 대한 지원

LSVCC는 노동조합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여기에서 개인들은 공동출자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을 구매하고 있는데, 1983년에 설립된 Quebec Fonds de Solidarite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다.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기금에 출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조세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조세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금운영자는 총 5천만캐나다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자는 최소 8년간 그들의 자금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1996년 6월의 예산안 발표 이전까지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벤처기금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연간 최초 5천캐나다달러에 해당하는 주식구매비용의 20%에 대해 조세공제혜택을 받았으며, 예산안 발표 이후 조세유인제도가 감축되어 조세공제는 15%로 감소하였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주식구매액도 5천캐나다달러에서 3,500캐나다달러로 줄어들었다. 또한 앨버타와 뉴펀들랜드 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20%의 조세공제를 부여하고 있는데, 1996년 6월 이전의 경우 총 40%의 조세공제혜택이 있었다. 한편 LSVCC에 대한 투자자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에의 가입자격이 부여되어 과세대상 소득에서 투자액을 공제함으로써 조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4. 일본

일본에서는 1972년~1974년과 1982년~1984년의 2차례에 걸친 벤처기업의 설립붐이 있었으나 성장세를 지속하지 못하여 경제성장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1, 2차 벤처기업 설립붐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미국과 같이 기술적 토대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유휴자금이 일시적으로 벤처산업에 투자되고 이후 급속도로 퇴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거품경제가 붕괴된 뒤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3차 벤처붐이 일어

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벤처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투자
 가에 대한 세제혜택, 주식장외시장 활성화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 현황

일본에는 현재 3개의 공적 벤처캐피탈회사와 기업육성센터(Venture Enterprise Center: VEC)가 있으며 121개의 민간 벤처캐피탈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공적 벤처캐피탈회사로는 도쿄(京東)중소기업투자육성(주), 오사카(大阪)중소기업투자육성(주), 나고야(名古屋)중소기업 투자육성(주) 등 3개사가 활동중이며, 이들이 공동 출자한 중소기업벤처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는 <표 9>와 같이 70%가 증권회사나 은행, 지방은행, 생명 및 손해보험 회사 등의 계열사로 존재하는데, 은행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출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벤처캐피탈회사 중 25%가 5억 엔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벤처캐피탈회사가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기관의 자회사인 관계로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과학 및 기술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초기단계의 기업보다는 중견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1983년~1993년의 기간중에 정보서비스업과 금융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유통판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표 9> 일본의 벤처캐피탈회사 설립 추이

(단위 : 개사)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증권계	9	16	17	18	18	19	19	20	22	23	23	22	22
은행계	4	5	9	10	11	11	12	14	15	14	15	15	15
지은계	-	1	18	32	35	35	35	36	39	40	40	40	40
생손보계	-	-	-	1	1	1	1	2	5	8	10	10	10
외자계	3	3	3	4	4	4	4	4	3	3	3	3	4
기타	2	7	13	16	17	18	20	21	25	29	29	29	30

자료 : 이덕훈 외, 『창업지원금융제도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6.

나. 벤처캐피탈 지원제도

일본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산업의 성숙화로 구조적 정체상태에 빠지고 엔고의 지속으로 산

거품경제가 붕괴된 뒤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3차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벤처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주식장외시장 활성화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표 10〉 일본 벤처캐피탈의 산업별 투자실적 추이

(단위 :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93.6
제조업	53.4	58.8	58.0	43.8	49.5	48.8	42.2	37.8	43.0	40.2	32.9
정보서비스업	12.1	11.8	8.4	6.5	5.9	5.8	5.0	5.5	4.7	3.8	3.1
유통판매업	6.1	10.6	8.5	13.6	10.3	15.6	13.2	17.5	18.0	18.9	18.8
건설업	0.9	2.0	3.0	1.4	3.3	6.1	6.8	6.7	6.7	7.8	5.0
금융업	15.6	3.5	3.0	18.7	8.4	4.0	6.4	11.0	5.1	4.6	2.8
부동산업	1.9	1.0	3.6	0.2	5.9	1.2	3.9	6.7	1.2	0.4	10.2
계	100	94.9	92.6	91.5	93.3	95.0	94.7	95.3	93.3	93.3	86.6
외국기업	0.0	5.1	7.4	8.5	6.7	5.0	5.3	4.7	6.7	6.7	13.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이덕훈 외, 『창업지원금융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6.
 연구개발형 기업육성 데이터(VEC), 『VEC연보』, 18호,平成5年, 1993.

업이 공동화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각종 경제단체를 비롯한 공공단체가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증권당국은 1995년 7월 기존 장외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공개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한 제2장외시장을 개설한 바 있다.

1)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원래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기존의 사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을 담당해 왔는데, 1989년 6월부터 주식회사의 신규설립시 발행주식의 인수업무도 시작하였다. 이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용자는 하지 않고 투자만 하고 있으며, 투자 후에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투자손실준비금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벤처캐피탈회사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해 활발한 투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

이 법은 1995년 4월부터 시행된 10년간의 한시법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가에 대하여 창업의 활성화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개시 5년 미만의 제조업, 인쇄업, 소프트웨어업 및 정보처리 서비스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종래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자본금 1억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경감을 위해 설비를 취득한 경우 7%의 세액공제 또는 30%의 특별상환제도를 신설하였고, 여기에는 리스를 통한 설비취득도 포함되어 리스료 총액의 60%에 상당하는 액수에 대해 7%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3) 지방정부의 지원제도

오카야마현(岡山縣)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사업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 제너레이션 육성지원사업'을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연간 최고 1,200만 엔을 2년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회사 설립시에는 최고 1천만엔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연이율 1.5%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한편 후쿠이현(福井縣)에서는 1995년부터 민간 벤처캐피탈에 대해 연간 2억엔의 투자자금을 제공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손실을 보증해 주고 있으며, 구마모토현(熊本縣)에서는 1995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기업가를 지원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밖에 효고현(兵庫縣)이 재해부흥기금을 활용한 '재해부흥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였고 미야기현(宮城縣)과 고치현(高知縣) 등에서도 縣販벤처캐피탈을 설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벤처캐피탈 지원을 위한 법인설립이 확산되고 있다.

4)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준 완화

1994년 7월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소유율이 50% 이하이며 기업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의 피지배회사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 50%를 넘는 등 피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벤처캐피탈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투자액의 주식가액이 25% 이하이거나 50% 이하로 벤처캐피탈이 다른 사업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소유회사에서 제외하여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장외시장의 개선

일본의 장외시장은 1963년 1월 일본증권업협회가 장외매매종목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조직화

일본의 「중소기업활동 촉진법」은 1995년 4월부터 시행된 10년간의 한시법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가에 대하여 창업의 활성화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 5월 전국의 187개 증권회사가 출자하여 주식의 장외거래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일본점두증권(주)이 설립되면서 장외시장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이 후 증권거래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주식장외시장 기능확충방안을 기초로 1991년 10월 JASDAQ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7월에는 벤처기업의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2장외시장을 개설하였는데, 제1장외시장에 비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특히 설립 경과연수, 이익, 자본금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한편 장외시장이 벤처기업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는 움직임에 호응하여 동경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여타 거래소시장도 1995년 12월 벤처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상장요건이 완화된 특칙시장(特別市場)을 새로이 개설하였다.

6) 비공식 벤처캐피탈의 지원제도

개인보유 유희자금의 벤처산업자금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주식을 투자한 개인출자자(business angel)에 대한 세금우대조치가 현재 중의원을 통과하고 참의원에 계류중에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창업후 5년 이내의 주식회사로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이 3% 이상인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 주식양도 손실의 이월공제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양도 이외에 회사도산 등에 의한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7) 「신규사업법」

1989년 12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법」은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산성 장관의 인정을 받은 특정신규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제도와 출자제도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조달과 기술개발 및 경영연수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86년 「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반정비기금이 신규사업법에 의해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1990년 신규사업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업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재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이용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다가 1994년부터 운용방안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운용개선으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9년~1993년의 5년 동안 인정사업이 12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4년에 8건, 1995년 6월까지 4건에 이르는 등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8) 공공금융기관의 융자제도 신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등 중소기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본개발은행 등에서도 신규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를 확충하고 있다.

9) 벤처기업센터

이는 1975년 중소기업의 채무보증과 정보교류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기업화에 필요한 자금차입에 대한 무담보 채무보증을 실시하고, 그 밖에 19%의 상한금리로 무담보 융자, 신입사원 연수, 각종 조사연구사업, 정보 및 정보교류장소 제공, 국제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93년 말까지 무담보 채무보증 실적은 연구개발형기업이 414건에 173억 5,300만엔이며, 1988년 개시한 지식융합형기업은 11건에 3억 1,750만엔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은 전체의 28.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1995년 10월부터는 종전의 채무보증액 상한이 연구개발형기업의 경우 8천만엔이고 지식융합형 기업이 4천만엔이던 것을 각각 1억엔과 5천만엔으로 인상한 바 있다.

5. 대 만

대만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임금수준의 상승으로 그동안 대만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던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의 비교우위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만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육성정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한편 대만의 경우 벤처캐피탈을 육성하는 주목적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대만의 벤처캐피탈은 주로 정부에서 선정 한 전략적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 국한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 벤처캐피탈을 육성하는 주목적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정부에서 선정한 전략적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 국한되어 있다.

가. 현황

대만의 벤처캐피탈은 과학기술산업과 유휴자금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촉진을 목표로 한 1983년의 「창업투자사업관리규칙」에 따라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11월 최초의 민간 창업투자회사인 「광대창업투자공사」가 설립되었으나 벤처캐피탈의 발전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활동이 부진하다가 1987년경 정부의 과학기술산업 육성정책과 자금시장의 변화 및 주식시장의 활황을 기반으로 하여 벤처캐피탈회사의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표 11〉 참조).

〈표 11〉 대만의 창업투자회사(기금) 설립 현황

(단위 : 개사, 억대만달러)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회사수	1	1	1	3	3	4	7	2	2	3
누계	1	2	3	6	9	13	20	22	24	27
자본금	2.00	2.00	8.00	6.00	15.40	19.38	35.98	21.85	7.00	17.28
누계	2.00	4.00	12.00	18.00	33.40	52.78	88.76	110.61	117.61	134.88

자료 : 홍성도,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본부, 1997.

대만벤처캐피탈협회(Taipei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1994년 사이에 벤처캐피탈 기금의 규모가 10% 포인트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28%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6년에는 6개의 벤처캐피탈회사가 추가로 설립되어 총기금 규모는 239억대만달러(944억원)에 달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충단계의 투자건수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금액면에서도 48%가 이 시기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 반도체, 전자, 통신, 정밀기기 분야의 투자비중이 높으며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는 11.2%에 불과하다. 투자지역별로는 금액기준으로 볼 때 국내투자가 75%, 해외투자가 25%로 해외투자의 비중이 상당하며 건당 평균 투자액은 국내가 2,300만대만달러, 해외가 2,700만대만달러로 해외투자가 단위투자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4년초 「중소기업개발공사 설립운영법」에 의거하여 공적 벤처캐피탈회사인 중소기업개발공사 2개사가 설립된 바 있다.

나. 벤처캐피탈 지원제도

대만에서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1983년 11월 행정원에 의한 「창업투자사업추동방안」 및 「창업투자사업관리규칙」 등의 제정을 통하여 마련되었으며, 이 법에 입각하여 민간 벤처캐피탈회사가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부터는 공적 벤처캐피탈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벤처산업으로 유휴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첨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순환을 돕기 위하여 주식시장에 대한 상장요건을 완화한 장외시장이 개설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1) 「창업투자사업추동방안」 및 「창업투자사업관리규칙」

이 법안은 첨단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기업의 설립을 장려할 목적으로 1983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1985년과 1987년에 개정되었다. 이 법안은 벤처캐피탈의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착수금(seed funds)의 지원,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및 경영자문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투자대상기업의 지분공개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대만의 개발금융자금과 첨단산업간의 연계강화 및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첨단기술의 도입 촉진 등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동 법안은 벤처캐피탈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와 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대상 기업은 그 규모와 무관하게 지정된 과학기술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식투자에 의한 투자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2) 공적 벤처캐피탈회사의 설립

대만에서는 1994년 초 「중소기업개발공사 설립운영법」에 의거하여 공적 벤처캐피탈회사인 2개의 중소기업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10억대만달러이며, 주요 주주를 보면 정부의 중소기업개발기금이 20%, 중소기업은행이 35%, 개인투자자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자자문, 중소기업의 국내기술합

대만의 주식시장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최소 자본규모와 이윤확보를 규정하는 등 상장요건이 엄격하여 첨단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보다 완화한 3부시장을 1984년에 개설하였다.

작, 시장개척 및 상품개발, 경영관리, 자금운용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벤처캐피탈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투자방식만이 허용되고 있고 투자대상은 은행 및 정부 등이 추천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3) 세제상의 유인제도

대만정부는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회사와 개인 및 법인투자자에 대해 조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벤처캐피탈회사는 정부승인을 받은 분야의 해외투자에 대해 몇 가지 조건하에서 5년간 세금이 면제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액수만큼 국내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회사는 25%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기업체에 비하여 최고법인소득세율이 20%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편 1990년 「산업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개인 혹은 법인이 벤처캐피탈회사에 투자하여 주주가 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만큼 3년차부터 당해연도 소득세의 5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세액공제 금액이 소득세보다 클 경우에는 향후 4년간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상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다른 회사에 투자할 경우 납입자본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승인받은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이때 얻어진 소득의 80%에 대해서 면세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4) 장외시장의 운영


대만의 주식시장은 원래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최소 자본규모와 이윤확보를 규정하는 등 상장요건이 엄격하여 첨단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1984년 상장요건을 보다 완화한 첨단기술시장(high tech market)이라 불리는 3부시장이 개설되었는데, 이 시장은 이름 그대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부 및 2부 시장에 비해 상장요건도 많이 완화되어 있는 편이지만 1996년 현재 단지 3개의 기업만이 상장되어 있는 등 상장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인정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만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벤처기업을 위한 장외시장은 1982년에 개설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간 거래실적은 부진하였으나, 1994년 NASDAQ과 같이 전산화된 거래체계가 도입되어 활발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1995년의 등록기준 완화로 상장기업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4년말 14개사에 불과하던 등록기업의 수가 1996년 현재 79개사로 급증하였고, 거래량은 169억 5,900만주에 4,535억 900만대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이외에도 회색시장(gray market)이 존재하여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데, 매일 70여개 기업의 주식가치가 인쇄되고 전문적인 증권인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활발한 거래활동을 벌이고 있다.

III. 결론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각 나라의 벤처캐피탈 지원정책이나 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차이에 따라 상이하지만,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투자환경의 육성이다.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금이나 보험금의 장기적인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재정적·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이나 투자자 그리고 투자조합을 위한 조세지원을 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 위험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즉 적절한 조세지원, 초기금융지원, 투자손실분의 보전, 자금융자결정 이전의 기술평가와 감사비용지원 등을 통하여 벤처캐피탈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재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고성장의 벤처기업을 선호하는 2부 주식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벤처캐피탈회사의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회사가 사업을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술특허에 대한 융자제도, 정보제공과 카운슬링 그리고 투자자간의 상호연락망 구축 등에 지원해야 한다. 

홍콩의 주권반환과 우리의 대응전략



한 상 국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주권반환의 의의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에 대한 영국의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됨으로써, 이후 50년간 홍콩은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로서, 현행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존속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일국양제(一國兩制)¹⁾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홍콩의 주권반환은 중국과 영국간의 합의를 이행하는 단순한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중국과 홍콩의, 나아가서는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의 주권반환이 정치·경제적으로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함을 상징하며, 또한 일국양제의 성공은 결과적으로 대만문제의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홍콩의 입장에서는 홍콩이 중국본토 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홍콩의 주권반환은 자본주의체제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주의체제 내로 편입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과연 양 체제가 병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²⁾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이는 1국가 2체제(one country, two system), 즉 하나의 국가 내에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가 병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홍콩의 주권반환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홍콩 경제의 구조적 특징

1996년 말의 GDP가 1,601억US달러인 홍콩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설립 기준으로 세계 3대 금융센터 중의 하나이고 둘째, 아시아 지역의 금융·무역·해운 및 항공 서비스의 중심지이며 셋째, 세계 5위의 외환시장이자 아시아 2위의 증권시장이고 넷째, 세계 1위의 컨테이너 증개항이며 다섯째, 국제경쟁력면에서 3위³⁾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경제적 위상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홍콩정부가 자유방임의 경제정책⁴⁾을 시행하고 둘째, 작은 정부로서 최소간섭정책을 추진했으며⁵⁾ 셋째, 무역·외환·자본거래의 자유화 및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했고 넷째, 기업우호적인 정부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및 금융제도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낮고 간편한 세제 및 무관세제도를 유지했고 다섯째, 우수한 전문인력, 근면한 근로자 및 왕성한 기업가정신이 있었으며 여섯째,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영어사용권에 속했다는 등의 경쟁력 우위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방임형 자본주의를 경제정책의 이념으로 하는 홍콩 경제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일까? 주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산업(금융·무역·해운 및 항공 등)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77~80%로서 서비스산업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⁶⁾ 제109조에서 홍콩이 국제금융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토록 경제, 법률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둘째, 중국경제와의 일체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의 상호의존도가 높아 양국 전체 교역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표 1〉 참조), 홍콩의 대중국 투자액이 외국인 직접투자총액의 53.4%(1995년)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표 2〉 참조). 이와 같이 높은 경제적 긴밀도는 주권반환 이후의 홍콩의 경제적 번영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화남경제권(華南經濟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통합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⁷⁾. 이와 같은 통합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중국은 홍콩이 지니고 있는 금융·무역·해운·항공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혁·개방으로 가속도가 붙은 본토 경제를 더욱 발전시

2) 홍콩의 역사(略史) 및 향후의 지위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3) IMD와 World Economic Forum의 1995년 평가이다.

4) free and open economy를 지향했다.

5) 민간의 자율(free and fair competition)과 책임(minimum interference)을 중시했다.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에 대한 영국의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됨으로써, 이후 50년간 홍콩은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로서, 현행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존속하게 되었다.

〈표 1〉 홍콩과 중국의 연도별 교역량

(단위 : 10억HK달러)

교역	내용	1991	1995	1996
수출	홍콩내 생산품의	54.4	63.6	61.6
	대중국수출액	(321.0)	(231.7)	(212.2)
	재수출액	153.3	384.0	417.8
		(534.8)	(1,112.5)	(1,185.8)
수입	중국으로부터의	293.4	539.5	570.4
	수입액	(779.0)	(1,491.1)	(1,535.6)

주 : 1. FOB가격 기준임.

2. () 안은 홍콩내 생산품의 수출총액, 재수출총액 및 수입총액임.

자료 : CSDHK, Hong Kong Statistics 1997, 1997.

〈표 2〉 대중국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현황

(단위 : 백만US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직접투자총액		4,667	11,292	27,771	33,946	37,806
국	홍콩	2,579	7,706	17,445	19,823	20,185
	미국	331	519	2,068	2,491	3,084
가	일본	610	748	1,361	2,086	3,212
	대만	472	1,053	3,139	3,391	3,165

주 : 1. 실행기준임.

2. 직접투자총액에는 기타투자액이 포함됨.

자료 : 『중국통계연감』, 1993~1996.

- 6) 중화인민공화국 주식령 제26호로 공포되었으며, 모두 9장 16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기본법」으로 약칭한다.
 7) 북경 소재 홍콩무역대표부의 Wang Wende는 반환 후에도 홍콩은 사회간접자본, 자본과 용역의 공급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Financial Times, 1997. 6. 16).

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홍콩경제가 중국경제와의 일체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경제의 부침과 궤적을 같이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대만 - 중국간 중계무역 기지 역할을 해 왔으며, 1988년 이후 양안(兩岸)간의 무역규모는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 경제부(經濟部)가 홍콩정청과 대만세관의 통계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1994년도의 양안간의 교역 총액(간접교역+직접교역)은 165억 1천만US달러로 대만 교역총액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50년 동안 약속대로 1국 2체제가 유지된다면, 홍콩은 양안간의 중계무역 기지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재수출 비중이 80% 내외이며, 이와 같은 추세는 1991년의 69.8%에서 1996년에는 84.8%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표 3> 참조).

<표 3>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재수출 비중

(단위 : 10억HK달러, %)

	1991	1995	1996
수출총액	765.9	1,344.1	1,397.9
재수출총액	534.8(69.8)	1,112.5(82.8)	1,185.8(84.8)

주 : () 안은 재수출총액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CSDHK, Hong Kong Statistics 1997, 1997.

그러면 중국경제와 일체화가 진전되고 있는 홍콩경제는 중국⁸⁾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관계에 있을까?

첫째, 홍콩은 중국경제의 관문이다. 무역면에서 상호의존도가 높아 양국 전체 교역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홍콩의 대중국 수출액(1996년말)은 홍콩 수출액의 34.3%를 차지하고, 홍콩의 대중국 수입액(1996년말)은 홍콩 수입액의 37.1%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투자면에서는 홍콩의 대중국 투자액이 실행기준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총액의 53.4%(1995년)에 달하여 최다를 나타내고 있으며(<표 2> 참조), 외국기업은 홍콩과 연계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등 홍콩을 일종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홍콩 투자액도 200억US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산업면에서 홍콩기업은 생산시설을 남부 중국으로 이전하여⁹⁾ 이들 지역을 홍콩의 산업기지화하고 홍콩은 이를 관리·판매 및 금융지원하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8) 1996년말 기준으로 인구는 12억 3천만명, GDP는 8,170억US달러, 1인당 GDP는 680US달러, 무역고는 2,899억 US달러, 외환보유고는 1,830억US달러이다.

9) 그 결과 중국 남부에서 2만 3천개의 합작 투자업체와 8만개의 외주가공 공장에 약 300만명의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통합화 현상의 진전으로 중국은 홍콩이 지니고 있는 금융·무역·해운·항공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혁·개방으로 가속도가 붙은 본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홍콩경제가 중국경제와의 일체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경제의 부침과 궤적을 같이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홍콩은 중국 남부지역 경제의 지원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 광둥성(廣東省), 복건성(福建省) 및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중국은 1980년 후반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연 17%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지역경제권(화남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홍콩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적인 분업생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교역, 투자 및 금융부문에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혈연·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아·태지역 경제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III. 주권반환이 홍콩, 중국 및 대만경제에 미치는 영향

155년간의 영국의 식민통치를 마무리하는 중국으로의 주권반환은 과연 홍콩과 중국 및 대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갖추고 있으며, 각각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홍콩, 중국 및 대만순으로 홍콩 주권반환의 영향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홍콩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분석한 후 주권반환이 홍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는 첫째, 홍콩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다. 이는 홍콩의 장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며, 만약 중국 지도부가 중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 홍콩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계속 견지한다면 일국양제는 유지되고 나아가서는 「항인치항(港人治港)」¹⁰⁾이 실시될 것이다.

둘째,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여 여부이다. 만약 중국식 법·제도 및 상거래 관습이 홍콩으로 유입되고, 현행 홍콩의 경제체제·법·제도 등에 대한 중국의 간여로 인해 홍콩의 법·제도 등이 유명무실화될 경우 홍콩의 경제적 활력은 저해되고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위치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자유와 다른 분야의 자유간에 완전한 분리가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속박은 경제적 구속으로 연결될 수 있다.

10) 홍콩 사람에 의한 홍콩 통치를 말한다.

셋째, 중국의 홍콩 통치에 관한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이다. 중국은 「기본법」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 및 향후 50년간 현 체제 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구해 온 대홍콩 정책의 기본틀이며 원칙이다. 이붕(李鵬) 총리가 “우리나라는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한 다음에도 일국양제 방침을 견지하고 기본법을 진지하게 실행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홍콩 사람에 의한 홍콩 통치의 방침을 집행하고, 현행 사회·경제제도를 바꾸지 않아 계속 자유항, 세계의 금융, 무역, 해·공수송센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보증한다”라고 1997년 3월에 전인대(全人大)¹¹⁾에서 보고한 바 있지만 많은 홍콩인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홍콩 주민들의 중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및 순응의 정도이다. 홍콩 주권반환식에 참석한 강택민(江澤民) 주석이 “우리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홍콩은 고도의 자치 속에 홍콩인 스스로에 의해 통치될 것이다”라고 밝힌 내용을 준수하고 나아가서는 중국정부가 홍콩의 특수성, 서구식 생활문화, 자유분방한 기업활동 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홍콩 주민들은 중국정부에 순응할 것이다.

주권반환이 홍콩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로 대별된다. 낙관적인 견해란 다소의 비관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일국양제 하에서 경제적 번영이 특히 향후 5~1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은 견해의 근거로는 첫째, 「기본법」에서 홍콩경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둘째, 홍콩의 발전이 중국의 이익에 직결되고, 경제개발에는 홍콩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홍콩과 중국경제의 통합은 양국에 대해 시장과 기회를 상호 제공해 줄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비교우위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점 셋째, 고도자치권과 일국양제 모델이 설득력을 잃게 되면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전망이 더욱 멀어질 것이므로 중국은 홍콩 현상유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점 넷째, 중국이 홍콩 현상유지의 약속을 위반하면 동남아경제권의 실세인 화교경제권으로부터 고립·단절되어 중국의 경제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일부 중국인 및 지방정부들이 투자해 놓은 홍콩내 부동산과 기업들이 많아 자신들의 부를 위태롭게 할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또한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유효송(俞曉松) 부주임이 홍콩기업을 외자기업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주용기(朱鎔基) 부총리도 중국정부 계열기업의 홍콩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이 낙관적인 견해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홍콩 재무장관 Donald Tsang Yam-kuen도 홍콩주권 인수 후 당분간은 홍콩경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997년 하반기와 1998년에도 각각 7%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¹²⁾

1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약칭이며 입법부에 해당한다.

12)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7. 5. 31, 1997. 6. 1.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홍콩경제의 최대장점인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퇴색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경제적 활력과 효율성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정부의 홍콩경제 간섭 여부보다는 홍콩기업인 중의 신흥세력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부의 경제개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Inchcape Pacific의 회장이면서 동건화(董建華) 행정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Raymond Ch'ien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¹³⁾.

비관적인 견해란 부패의 심화, 자유경쟁질서와 법치(法治)의 점진적 약화, 정치적 불안 증가, 인권 및 언론자유의 제한,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온 홍콩경제가 활력을 잃고 쇠퇴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주로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견해의 근거로는 첫째, 주권반환 후 중국의 정예군대가 홍콩외곽에 주둔하고, 공산당이 언론을 검열·통제하는 등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하에 있게 되면서 국제금융·무역부문 등에 대한 직접통제가 없더라도 그 명성은 쇠퇴할 것이라는 점 둘째, 홍콩내 중국계 기업은 중국정부 특히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중국계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시장경제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내에서 간섭이 심해지면 홍콩주민은 집단적 반발이나 시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천안문 사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홍콩경제의 최대장점인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퇴색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경제적 활력과 효율성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의 주권반환은 중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주로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이다. 첫째, 홍콩의 하이테크산업인 기술, 금융·보험, 유통, 건설, 수송·물류시스템, 부동산개발 관련기술과 노하우의 대중국 이전을 촉진시켜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증대로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영국 식민지 홍콩이 아니라 홍콩차이나로서 홍콩기업이 활발하게 중국으로 진출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중국 내수시장이 광역화되고 나아가

13) *Financial Times*, 1997. 6. 1.

서는 서구화가 가속될 것이다. 셋째, 대만-중국-동남아간의 직접거래 증가로 인해 중화경제권의 탄생과 화교기업간의 결속강화가 촉진될 것이다. 넷째, 홍콩은 국제금융센터로, 상해는 국내 금융센터로 성장시킴으로써 중국 내부적으로는 금융센터의 재조정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홍콩 달러화의 가치하락과 인민폐(人民幣)의 가치상승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홍콩의 주권반환은 홍콩-대만간의 경제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만은 홍콩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홍콩이 무역수지면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홍콩의 대대만 수출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993년: 2.7%, 1994년: 2.4%, 1995년: 2.7%) 내외이고,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1993년: 8.8%, 1994년: 8.6%, 1995년: 8.7%) 내외이다 (<표 4> 참조). 지금까지 홍콩은 대만-중국간의 교역 및 투자의 중간기지 내지는 완충지 역할을 해왔으나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 대만의 입장에서는 홍콩과의 교역이 곧 중국과의 교역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대중국 교역 및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양안간의 교류에 있어 주권반환 이전보다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전기침(錢其琛) 외교부장이 1995년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기본법을 준수하고, 등록 목적에 부합된 활동을 하는 한 대만기구의 홍콩존속은 보장된다는 7개항의 원칙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대만 기업들은 국내 투자여건의 악화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도 이상의 대중국 투자로 인해서 대만경제가 중국경제에 예측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대만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므로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 홍콩과 대만의 연도별 교역량

(단위: 10억HK달러)

교역	내용	1993	1994	1995
수출	홍콩내 생산품의 대만수출액	6.3 (223.0)	6.1 (222.1)	7.9 (231.7)
	재수출액	21.9 (823.2)	22.4 (947.9)	27.8 (1,112.5)
수입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94.0 (1,072.6)	107.3 (1,250.7)	129.3 (1,491.1)

주: 1. FOB가격 기준임.

2. () 안은 홍콩내 생산품의 수출총액, 재수출총액 및 수입총액임.

자료: CSDHK, Hong Kong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September 1996.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 대만의 입장에서는 홍콩과의 교역이 곧 중국과의 교역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대중국 교역 및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양안간의 교류에 있어 그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IV. 홍콩의 주권반환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와 홍콩은 비교적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며, 홍콩을 통한 대중국 무역 및 투자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홍콩에는 무역·금융·건설관련 회사·상사 등이 주축이 되는 약 800여개의 한국기업이 있으며, 약 7천명(교민 1천명 포함)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홍콩의 주권반환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과 투자 양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 측면을 대홍콩 무역과 홍콩을 경유하는 대중국 무역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합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대홍콩 무역과 이에 대한 영향을 보면, 홍콩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무역대국으로 우리나라의 1996년도 대홍콩 수출이 111.3억US달러, 수입이 11.4억US달러로서(〈표 5〉 참조) 주교역 대상국 중의 하나이다. 홍콩의 주권반환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홍콩의 금융·수송·물류체계의 비효율화로 인한 수출단가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의 대홍콩 교역은 일시적인 증가를 둔화와 위축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또 주권반환으로 인한 홍콩 경제성장률의 둔화 역시 우리 기업의 대홍콩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홍콩 경유 대중국 무역과 이에 대한 영향을 보면, 홍콩 경유 대중국 간접수출은 대홍콩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 25.6%, 1993년에 33.9%, 1994년 상반기에는 34.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대중국 직접수출입이 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어, 우리의 대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질 것이다(〈표 6〉 참조). 특히 홍콩의 주권반환으로 인해 홍콩의 금융·수송 및 물류체계의 비효율화가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이 홍콩을 통한 대중국 교역보다는 중국과의 직교역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표 7〉 참조).

세계시장에서의 경합 측면을 보자. 세계 제조업품 시장에서 중국, 홍콩,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변화 추이는, WTO의 통계(1995)에 의하면 199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제조품 수출의 2.93%, 수입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수출의 3.28%, 수입의 3.13%를

〈표 5〉 한국의 대홍콩 교역 추이

(단위 : 백만US달러)

	총교역량	수출	수입
1990	4,394	3,780	614
1991	5,542	4,769	773
1992	6,703	5,909	794
1993	7,364	6,430	934
1994	8,675	8,015	660
1995	11,520	10,682	838
1996	12,274	11,131	1,143

자료 : KOTIS.

〈표 6〉 우리나라의 홍콩 경유 대중국 간접수출 비중

(단위 : 백만US달러, %)

	1990	1991	1992	1993	1994
대홍콩수출(A)	3,780	4,769	5,909	6,431	3,867
대중국간접수출(B)	968	1,368	1,861	2,179	1,341
(B/A)	25.6	28.7	31.5	33.9	34.7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홍콩 주권반환 이후의 중국경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1997. 4.

〈표 7〉 한국의 대중국 무역 추이

(단위 : 억US달러, %)

	1979	1985	1990	1992	1994	1995	1996	연평균증가율
수출입	6	518	28.5	63.8	116.7	165.4	199.2	38.3
수출	0	40	5.8	26.5	62.0	91.4	113.8	64.2
수입	6	478	22.7	22.7	54.6	74.0	85.4	24.7
수 지	6	-438	-16.8	-10.7	7.4	17.4	28.4	-

주 : 연평균증가율은 1990~1996년 사이의 증가율임.

자료 : 관세청 통상산업부.

그리고 홍콩은 수출의 4.63%, 수입의 4.65%를 차지하고 있어(〈표 8〉 참조), 주권반환 이후에 세계시장에서의 한·중간의 수출경합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홍콩의 하이테크와 경영노하우의 이전 가속화로 인해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수출시장에서의 한·중간 경합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홍콩의 주권반환으로 인해 홍콩의 금융·수송 및 물류체계의 비효율화가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이 홍콩을 통한 대중국역보다는 중국과의 직교역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홍콩 경유 대중국 간접수출이 전체 대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다음으로 투자 측면을 보자.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88년 2건의 투자가 효시이며, 이후 고임금·고지가 등 국내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에 의한 원가절감형 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서 199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2년의 한·중수교와 중국정

〈표 8〉 한국, 중국 및 홍콩의 제조업품 수출입 현황

(단위 : 10억US달러, %)

		1991	1992	1993	1994
수출	전 세계	2,469 (100)	2,663 (100)	2,551 (100)	3,042 (100)
	중국	54.13 (2.19)	66.81 (2.50)	74.28 (2.91)	99.89 (3.28)
	홍콩	90.75 (3.68)	110.16 (4.14)	126.00 (4.94)	140.84 (4.63)
	자체수출	28.02	28.26	26.97	26.95
	재수출	62.73	81.90	99.03	113.89
	한국	65.66 (2.66)	70.86 (2.66)	76.27 (2.99)	89.04 (2.93)
수입	전 세계	2,507 (100)	2,704 (100)	2,691 (100)	3,089 (100)
	중국	51.56 (2.06)	64.68 (2.39)	87.17 (3.24)	96.74 (3.13)
	홍콩	86.53 (3.45)	107.66 (3.98)	123.34 (4.58)	143.62 (4.65)
	한국	51.72 (2.06)	51.46 (1.90)	52.40 (1.95)	67.89 (2.2)

주: 1) 수입은 FOB 기준임.

2) () 안은 세계시장 점유율임.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Trend and Statistics*, 1995.

부의 개혁·개방정책의 확대·심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더욱 가속화되어 1994년부터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제1위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표 9〉 참조).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과 1차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중국 투자의 지역별 분포가 최근에는 양자강 이북의 발해만(渤海灣)지역(北京, 天津, 遼寧省, 河北省, 山東省)에서 상해 및 강소성(江蘇省) 지역으로 남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해 및 강소성 지역은 중국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활발한 지역의 하나로서 1인당 GDP가 높기 때문에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홍콩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광둥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에서 산둥성, 길림성, 요녕성 및 허북성 등지로 서서히 북상하고 있으며, 주권반환으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대중국 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므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둥성 등 양자강 북쪽 연안지역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내수시장 판매경쟁에서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기업의 대홍콩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며, 무역업이 주도하고 있는데(〈표 10〉 참조),

〈표 9〉 한국의 대중국 투자추이

(단위 : 건, 백만US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누 계
건 수	30	69	170	377	838	730	708	2,992
금 액	22.33	42.47	141.13	263.98	631.05	818.33	817.81	2,737.10
건당금액	0.74	0.62	0.83	0.70	0.75	1.12	1.16	0.94

주 : 1. 투자실행 기준임.
 2. 누계는 1996년 12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 한국은행.

〈표 10〉 한국기업의 연도별 대홍콩 투자현황

(단위 : 건)

	1986~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무역업	39	12	23	19	25	8
제조업	7	6	14	10	12	11
기 타	7	3	1	2	5	2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1995. 6.

홍콩의 주권반환에 따른 외국 기업의 반응은 주권반환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그룹과 투자를 축소하고 등록지를 해외로 이전시켜 위험을 분산 내지는 감소시키려는 그룹으로 대별된다.

주권반환 후에도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창구, 금융·무역 등의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므로 금융·무역·은행·보험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소액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V. 우리의 대응전략

홍콩의 주권반환에 따른 외국 기업의 반응은 주권반환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그룹과 투자를 축소하고 등록지를 해외로 이전시켜 위험을 분산 내지는 감소시키려는 그룹으로 대별된다¹⁴⁾. 그러나 우리 기업은 양자택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각 개별기업이 처한 환경, 기업목표 및 중국과의 관계 등에 따라 양자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적극적으로 대중국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전략을 통해서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노력하며,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콩 외곽 진주, 홍콩내 공산당 조직의 확산, 입법의회의 친중국계 인사로의 개편, 법·언론의 친중국화 등의 현상으로 인해 홍콩의 경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공식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간섭 및 영향력 행사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한 특별행정구 고위관리를 통한 시행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서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중국당국, 특별행정구 정부 및 신화사(新華社) 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홍콩달러화의 가치하락과 인민폐의 가치상승에 대비한 환리스크 헤징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비록 정치적으로 일국양제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홍콩경제와 중국경제의 통합화가 가속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화폐교환 비율의 설정이 양자간 교역에 편리할 것이다. 따라서 홍콩달러화의 인민폐에 대한 상대적 가치는 주권을 인수하는 중국 인민폐에 유리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홍콩달러로 표시된 L/C를 수취할 경


14) 이가성(李嘉誠)의 장강실업(長江實業)이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고, Hong Kong Shang Hai Bank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우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환리스크 헤징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화교중심의 「중화경제권」의 부상이 예상되므로 홍콩 및 동남아 화교기업과의 협력·계휴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홍콩은 동남아 화교들의 대중국 진출의 중개지 내지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 화교들은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중국 투자에 임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중국 투자 및 기업경영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이들이 구축한 네트워크 및 현지 권력층과의 인맥은 성공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홍콩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향후 중국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비록 주용기 부총리가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 중국정부 계열 기업의 홍콩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기업의 홍콩진출은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들 진출할 기업 및 이미 진출한 중국기업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용이한 중국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는 또한 향후 중국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홍콩을 통해 광둥성, 복건성, 해남성(海南省) 등 중국 남부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광둥성은 홍콩과 국경이 접하여 중국 내륙지방 수입물자의 30% 이상이 이곳을 통해 조달되고 있으므로, 상품수출시장으로서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홍콩, 마카오 및 앞서 열거한 중국 남부지역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활발하므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홍콩의 주권반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홍콩의 주권반환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국토분단이라는 상황하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특히 홍콩의 주권반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때 고도자치권의 보장, 특유의 경제체제 불변 보장 등은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부록〉 홍콩 역사 및 향후의 지위

가. 홍콩의 인문·지리적 환경의 개관

- 면적 : 1,075km²
- 인구 : 631만명(1996년말 : 98%가 중국계)
- 기후 : 아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22℃~23℃)
- 언어 : 영어, 중국어
- 종교 :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등
- GDP : 1,601억US달러(1996년말)
- 1인당 GDP : 25,350US달러(1996년말)
- 대외교역 : 4,205억US달러(1996년말, 수출 : 1,985억US달러, 수입 : 2,220억US달러)
- 외환보유고 : 621억US달러(1996년말)
- 종합소비자물가 지수 : 전년대비 6.3% 상승(1996)

나. 홍콩의 할양(割讓) 및 조차(租借) 역사

○ 홍콩 할양

- 제1차 아편전쟁(1840년)에서 영국 승리
- 1842년 8월 난징조약에 의해 청조는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 할양

○ 구룡반도(九龍半島)의 영구 할양

- 제2차 아편전쟁(1859~1860)에서 영국 승리
- 1860년 10월 북경조약 체결로 구룡반도와 인근의 1개 섬을 영국에 할양

○ 신계(新界)의 99년간 조차

- 청일전쟁(1894. 8~1895. 4)에서의 중국의 패배 및 프랑스의 광주만 조차를 계기로 영국은 홍콩 및 구룡항의 방위를 목적으로 청조와 제2차 북경조약을 체결
- 제2차 북경조약(1898. 6)의 체결로 영국은 구룡반도 북부 및 235개 섬 등 신계를 99년간(1898. 7. 1~1997. 6. 30) 조차

다. 주권반환의 경과

- 1979. 3 등소평이 홍콩총독(Murray MacLehose)과 홍콩반환 문제를 첫 논의
- 1982. 7 1997년 이후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
- 1982. 9 대처(Thatcher) 영국수상 방중, 등소평과 홍콩문제에 관해 회담
- 1982.10 중 · 영 홍콩반환 제1차 회담 시작
- 1983. 7~84. 4 중 · 영 홍콩반환에 관한 회담 13회 개최
- 1984. 12. 19 홍콩 반환 중 · 영 공동성명, 「홍콩반환협정」 조인
* 1국 2체제, 50년간 현상유지
- 1990. 4. 4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전인대 통과, 홍콩 첫 정당 설립
- 1992.10 패튼(Christopher Patten) 홍콩총독, 입법회의 직선제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민주개혁안 발표(홍콩민주화 및 의회직선안을 둘러싸고 중 · 영간 마찰)
- 1994. 8 중국, 홍콩기본법에 따르지 않고 구성된 입법의회 해체 경고
1997년 주권반환 후 입법원 대체 구상 공개
- 1995. 9 홍콩 최초의 민주 직선 입법의원 선거에서 반중세력의 민주당 압승
- 1996. 1. 26 예비운영위원회를 대신할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발족
- 1996. 10 초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Chief Executive) 동건화 선출
- 1997. 3. 14 전인대에서 홍콩기본권의 3개조항 등 인권법 규정폐지, 개정결의
- 1997. 5. 18 북경~홍콩 특급 직통열차 운행 개시
- 1997. 7. 1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 공식 선언

라. 1997년 이후의 홍콩지위

: 「홍콩문제에 관한 영 · 중 공동선언¹⁾」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기본구상

- 고도자치권(외교 · 국방 제외)을 향유하는 「홍콩특별행정구」 설치
- 현행의 자본주의 체제 50년간 불변(일국양제)

○ 정치제도

- 홍콩의 행정수반은 홍콩 선거위원회에서 선출, 중국정부 임명(임기 5년)

1) 1985년 5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 중국정부는 외교 및 국방 책임, 홍콩에 외교사무소 설치

홍콩내 중국군 주둔(제42집단군의 유진무 소장)

• 입법회의(60명)는 주민직접선거 및 직능대표로 구성

: 제정법률은 중국 전인대 보고. 전인대 반러법률은 무효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개정권은 중국 전인대 전속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해석권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전속

○ 경제제도

• 자본주의 체제 50년간 유지

• 독자적인 경제적 지위 향유

: 재정권, 조세권, 화폐발행권 보장

국제기구 참여권능 및 국제협약 체결권능(Hong Kong, China) 보장

별개의 관세지역 유지

• 국제적인 상업·금융도시로서의 법적 환경 보장

: 외환 및 자본이동 자유

무관세정책 지속 등

〈참고문헌〉

김화섭, 『동북아시아 중화경제권과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1997. 1.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홍콩 주권 반환 이후의 중국경제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1997.4.

동양학연구학회(편), 『홍콩은 어디로 가는가』, 서울: 우석출판사, 1997. 6.

李鵬의 全人大 보고문, 1997. 3.

타카지마 미네오, 『홍콩의 미래』, 김유곤 옮김, 서울: 우석출판사, 1997.6.

大西 康雄(編), 『香港返還と中國, 臺灣 - 一國家二制度の行方 -』,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97.1.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ong Kong, *Hong Kong Statistics 1997*, 1997.

_____, *Hong Kong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September 1996.

Financial Times, 1997. 6. 16.

Time, 1996. 11. 11.

The Economist, 1997. 6. 7.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7. 5. 31, 1997. 6. 1.

WTO, *International Trade-Trend and Statistics*, 1995.

<http://www.ceoffice.org.hk>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실; 중문,영문)

<http://www.info.gov.hk>(Hong Kong Government Information Center; 중문,영문)

<http://www.hk1997.china.com> (홍콩1997; 중문,영문 - 중국공식사이트)

<http://www.scmp.com/1997> (*South China Morning Post*; 영문)

<http://www.wenweipo.com>(『文匯報』; 중문)

<http://www.snweb.com>(『人民日報』; 중문)

<http://www.ccnnews.com>(『新聞大觀』; 중문,영문 - 중요신문기사 발췌)

〈부록〉 홍콩 역사 및 향후의 지위

가. 홍콩의 인문·지리적 환경의 개관

- 면적 : 1,075km²
- 인구 : 631만명(1996년말 : 98%가 중국계)
- 기후 : 아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22℃~23℃)
- 언어 : 영어, 중국어
- 종교 :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등
- GDP : 1,601억US달러(1996년말)
- 1인당 GDP : 25,350US달러(1996년말)
- 대외교역 : 4,205억US달러(1996년말, 수출 : 1,985억US달러, 수입 : 2,220억US달러)
- 외환보유고 : 621억US달러(1996년말)
- 종합소비자물가 지수 : 전년대비 6.3% 상승(1996)

나. 홍콩의 할양(割讓) 및 조차(租借) 역사

○ 홍콩 할양

- 제1차 아편전쟁(1840년)에서 영국 승리
- 1842년 8월 남경조약에 의해 청조는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 할양

○ 구룡반도(九龍半島)의 영구 할양

- 제2차 아편전쟁(1859~1860)에서 영국 승리
- 1860년 10월 북경조약 체결로 구룡반도와 인근의 1개 섬을 영국에 할양

○ 신계(新界)의 99년간 조차

- 청일전쟁(1894. 8~1895. 4)에서의 중국의 패배 및 프랑스의 광주만 조차를 계기로 영국은 홍콩 및 구룡항의 방위를 목적으로 청조와 제2차 북경조약을 체결
- 제2차 북경조약(1898. 6)의 체결로 영국은 구룡반도 북부 및 235개 섬 등 신계를 99년간(1898. 7. 1~1997. 6. 30) 조차

다. 주권반환의 경과

- 1979. 3 등소평이 홍콩총독(Murray MacLehose)과 홍콩반환 문제를 첫 논의
- 1982. 7 1997년 이후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
- 1982. 9 대처(Thatcher) 영국수상 방중, 등소평과 홍콩문제에 관해 회담
- 1982.10 중·영 홍콩반환 제1차 회담 시작
- 1983. 7~84. 4 중·영 홍콩반환에 관한 회담 13회 개최
- 1984. 12. 19 홍콩 반환 중·영 공동성명, 「홍콩반환협정」 조인
* 1국 2체제, 50년간 현상유지
- 1990. 4. 4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전인대 통과, 홍콩 첫 정당 설립
- 1992.10 패튼(Christopher Patten) 홍콩총독, 입법회의 직선제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민주개혁안 발표(홍콩민주화 및 의회직선안을 둘러싸고 중·영간 마찰)
- 1994. 8 중국, 홍콩기본법에 따르지 않고 구성된 입법의회 해체 경고
1997년 주권반환 후 입법원 대체 구상 공개
- 1995. 9 홍콩 최초의 민주 직선 입법의원 선거에서 반중세력의 민주당 압승
- 1996. 1. 26 예비운영위원회를 대신할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발족
- 1996. 10 초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Chief Executive) 동건화 선출
- 1997. 3. 14 전인대에서 홍콩기본권의 3개조항 등 인권법 규정폐지, 개정결의
- 1997. 5. 18 북경~홍콩 특급 직통열차 운행 개시
- 1997. 7. 1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 공식 선언

라. 1997년 이후의 홍콩지위

: 「홍콩문제에 관한 영·중 공동선언¹⁾」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기본구상

- 고도자치권(외교·국방 제외)을 향유하는 「홍콩특별행정구」 설치
- 현행의 자본주의 체제 50년간 불변(일국양제)

○ 정치제도

- 홍콩의 행정수반은 홍콩 선거위원회에서 선출, 중국정부 임명(임기 5년)

1) 1985년 5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 중국정부는 외교 및 국방 책임, 홍콩에 외교사무소 설치
 홍콩내 중국군 주둔(제42집단군의 유진무 소장)

- 입법회의(60명)는 주민직접선거 및 직능대표로 구성

: 제정법률은 중국 전인대 보고, 전인대 반려법률은 무효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개정권은 중국 전인대 전속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해석권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전속

○ 경제제도

- 자본주의 체제 50년간 유지
- 독자적인 경제적 지위 향유
 - : 재정권, 조세권, 화폐발행권 보장
 - 국제기구 참여권능 및 국제협약 체결권능(Hong Kong, China) 보장
 - 별개의 관세지역 유지
- 국제적인 상업·금융도시로서의 법적 환경 보장
 - : 외환 및 자본이동 자유
 - 무관세정책 지속 등

〈참고문헌〉

김화섭, 『동북아시아 중화경제권과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1997. 1.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홍콩 주권 반환 이후의 중국경제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1997.4.
 동양학연구학회(편), 『홍콩은 어디로 가는가』, 서울: 우석출판사, 1997. 6.
 李鵬의 全人大 보고문, 1997. 3.
 타카지마 미네오, 『홍콩의 미래』, 김유곤 옮김, 서울: 우석출판사, 1997.6.
 大西 康雄(編), 『香港返還と中國, 臺灣 - 一國家二制度の行方 -』,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97.1.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ong Kong, *Hong Kong Statistics 1997*, 1997.
 _____, *Hong Kong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September 1996.

Financial Times, 1997. 6. 16.

Time, 1996. 11. 11.

The Economist, 1997. 6. 7.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7. 5. 31, 1997. 6. 1.

WTO, *International Trade-Trend and Statistics*, 1995.

<http://www.ceoffice.org.hk>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실; 중문, 영문)

<http://www.info.gov.hk> (Hong Kong Government Information Center; 중문, 영문)

<http://www.hk1997.china.com> (홍콩1997; 중문, 영문 - 중국공식사이트)

<http://www.scmp.com/1997> (*South China Morning Post*; 영문)

<http://www.wenweipo.com> (『文匯報』; 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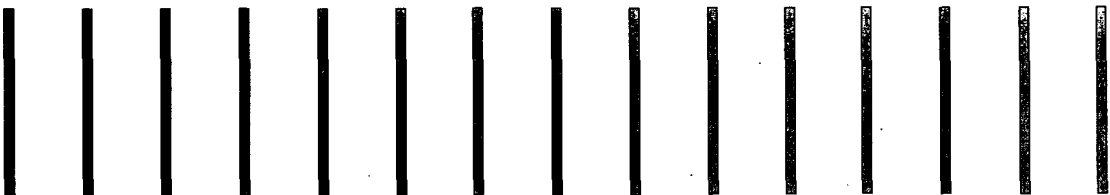
<http://www.snweb.com> (『人民日報』; 중문)

<http://www.ccnnews.com> (『新聞大觀』; 중문, 영문 - 중요신문기사 발췌)



정책흐름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선
2. 1997년 4월까지의 국세실적(잠정)
3. 독립공채상환
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5. 한·EU WTO 주세협의 결과
6. 199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특례자에게 표준신고율 미적용
7.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





다음은 재정관련 주요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선

※이 자료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7월 1일에 발표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선」의 내용입니다.

I. 배경

- 지난해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권익보호규정이 대폭 신설되고 1997년 7월 1일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및 납세자권리헌장에 규정된 납세자의 제반권리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세정체제 확립이 필요
-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업무는 납세자편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 현행 관련 훈령·지침 등을 전면 보완하여 종사직원들이 업무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업무분야별·권리항목별로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지침으로 제정·시달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 향후 우려되는 납세자 권익침해 또는 절차상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한 다툼의 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신뢰를 보다 두텁게 하는 계

기가 되도록 하고자 함.

II. 분야별 업무처리지침

1. 납세자의 성실성 추경

- 모든 납세자는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함.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당해 납세자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신중을 기하도록 함.
 -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

- 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최근 3과세기간(또는 3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각종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과 상치되지 않도록 그 선정기준을 객관화·과학화하고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함.

2. 중복조사의 금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체조사를 하는 경우

-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및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상기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조사사유를 명백히 하여 이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에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중복조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함.
-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복조사 여부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집행하고자 함.
- 법인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각종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확인조사는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한 과생자료 등 과세자료는 조세채권일실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세무조사시 동시에 처리하도록 함.
- 자체탈세정보자료 처리를 위한 부분조사는 중복조사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납세자가 중복조사로 오해할 소지가 크고 조사공무원이 심사분석실적 등을 의식하여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조사하는 등 조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각급 관리자는 자료의 채택 및 활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조사범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함.

- 각종 서면분석, 사후관리 등의 업무는 각 세목별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제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우편에 의하여 보정요구하고 납세자의 보정서류 제출도 우편에 의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서면분석,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서면분석 또는 사후관리결과 문제점 또는 이상항목이 도출된 경우 문제점 등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서면분석 문제점 관리대장」이나 「사후관리부」 등에 등재하여 추후 조사대상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 종전 법인세 서면분석시 특정 문제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던 현지확인은 폐지(1997 법인세 서면분석지침에 기반영)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원천세조사는 법인세조사 또는 소득세조사 등에 통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과적인 원천징수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원천세 표본조사나 원천징수 불성실자에 대한 원천세조사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조사시 원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천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원천세 조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도록 함.

3.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조사결과통지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사유 등을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범위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그 조사사유 등을 당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함.
- 자료처리를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의 규모,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 특히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장부예치에 의한 특별조사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수용범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 납세자의 조사연기신청이 있을 경우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연기를 허용하도록 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6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 조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사연기를 허용

- 조사관할 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 조세법칙조사, 법인세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시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자료처리를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의 규모,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를 통지
-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결정전 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
- 기타 자료과세, 무·과소납부자 당연경정, 서면분석 등에 의한 고지시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 다만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정전 통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결정전 통지는 하도록 함.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는 법인세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시조

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가. 조세에 관한 전문가의 범위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대리인의 권한이 있음을 서면(위임장 등)으로 증명하는 자
-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포함되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정됨.

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의 범위

- 현행 법규정상으로는 조세법칙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조사, 상속세·증여세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시조사에 한정하고 있으나
- 세무조사운영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조사, 확인조사, 서면조사, 추적조사, 특별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의 경우로 확대 운영하도록 함.

다. 조력의 범위

-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조사시 대리인이 입회하게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납세자를 배제한 채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를 포괄적으로 대신 받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반 거래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규명하여 과세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세무대리인의 대리행위에는 한계가 있으며

- 납세자의 진술이 없이 세무대리인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부과처분 등을 할 경우 세무대리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 특히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세법 위반자인 납세자의 진술을 받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인의 진술만을 받아 납세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 따라서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

-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지득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

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상 지득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나. 정보의 제공

- 납세자가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
-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당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자)에 한하며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정보제공 요구에는 불응하도록 함.
- 납세자의 정보제공 신청 및 정보제공
 - 납세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관할 세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서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당해 납세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 정보제공시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원본대조필 확인'을 한 후 교부
 - 납세자가 제공요구한 정보가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관서에서는 그 사유를 당해 납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도록 함.
 - *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예시)
 - 납세자의 권리행사 범위

: 불복청구권, 경정청구권,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

- 필요한 정보의 범위

- 납세자가 제출한 제세 신고서 및 동 부속서류
- 제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내역
- 기타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 과세자료 등 과세의 근거가 되는 서류 등

6. 서류접수증의 교부

○ 세무공무원은 1997년 7월 1일부터 납세자 등으로부터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 접수증 교부대상 서류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관련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 이의신청서, 심사·심판청구서
-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
-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 등

- 접수증 교부의 예외(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 민원서류 접수거부 금지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7.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 납세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

○ 적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현행 심사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불복청구심의기구의 외부위원 보강

- 외부위원의 수를 내부위원보다 많게 조정하여 내부위원의 의사에 따라 의결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
- 세무서 공평과세협의회 내부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외부위원이 많게 조정하는 등

- 외부위원을 폭 넓게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조정

- 현행 사업자단체 대표 → 사업자단체 등 경제사회단체 대표로 확대 등

-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신속히 구제하는 간이심사제 실시

• 대상사건

: 인용결정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안

: 심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 각호의 처분(직권 시정대상)

• 처리절차

본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심사청구 간이심사 대상사건 검토 조서」를 처분청에 시달, 처분청에서는 7일 이내에 직권 시정 → 심사청구는 각하결정

- 심사청구처리 예정통지제 실시
- 심사청구서가 본청에 접수되는 즉시 청구인에게 처리담당과 결정 예정일 등을 우편(소정 양식의 우편엽서)으로 통지하여 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심사업무의 투명성 확보
- 통지할 사항
- : 처리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결정통지 예정일, 추가 증거서류 제출방법 등

- 서면분석, 자료처리, 민원업무 처리시 무리한 자료 요구 등 납세자의 불편초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정당한 사유 없는 부작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8.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
- 국세공무원은 공정한 자세와 예의바른 언행으로 성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관서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기 위하여 기본대화 요령을 숙지하고 주요 업무분야별로 지켜야 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국세공무원의 행동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친절하고 공정하면서도 적극적인 복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대한 월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을 기보완하였음.
- 조세의 과다부과, 과소환급도 처벌대상 직무에 포함시킴.
- 조사공무원의 부당한 장부예치 등 세무조사 운영 준칙 위반사례의 처벌근거를 명문화

1997년 4월까지의 국세실적(잠정)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6월 24일 발표한 「1997년 4월까지의 국세실적(잠정)」의 내용입니다.

- 경기하강국면의 지속 및 일부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특별소비세 등 경기에 민감한 세목들이 부진하고 지난해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이 부진하여 세입실적은 다소 저조함.
- 1997년 4월까지의 총국세실적(잠정)은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한 23조 5,596억원이며
 - 5월 이후로 납부가 이연된 법인세·교통세 등 납기연장분(약 8천억)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2.9% 증가한 수준임(납기연장분을 감안한 세입 진도비(進度比) : 32.9%(최근 3년 평균 : 35.3%)).
- 또한 한국은행 국고집중계정에 집계된 5월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일반회계국세+세의수입)도 전년

(단위 : %)

	증가율	예산증가율(세수목표 2조원 조정시)
4월까지의 실적 (납기연장분 감안)	-0.5 (2.9)	13.9(10.8) (13.9(10.8))
5월까지의 일반회계세입	1.6	12.1(8.7)

동기 대비 1.6% 증가한 25조 6,660억원에 그쳐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아직 5월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실적이 집계되지 않았고, 7월 25일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어 금년 세수를 정확히 전망하기는 어려우나
- 지금까지의 실적과 최근 몇 년간의 진도추이 등에 비추어 볼 때 「2조원 수정세수목표(72조원 수준)」 이상의 세수결함이 예상됨.

I. 1997년 4월까지의 국세실적

- 1997년 4월까지의 국세실적은 23조 5,5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5월 이후로 납부가 이연된 법인세·교통세·주세 등 납기연장분(약 8천억)을 감안하더라도 2.9% 증가(일반회계 1.5%)에 그쳐
- 1996년 대비 1997년 예산증가율인 13.9%(일반회계국세 : 12.2%)에 못 미치고 있고



1997년 4월까지의 국세실적(잠정)

(단위 : 억원, %)

	1997년 대비	1997년 4월까지 실적		진도비		
		1996년 대비	예산대비	납기연장분 감안시	3년실적 평균	
총 국 세	740,003	235,596	-0.5	31.8	32.9	35.3
일반회계국세	640,335	211,066	-1.2	33.0	33.9	35.8
내 국 세	519,075	176,109	-2.2	33.9	34.8	36.6
관 세	59,723	19,536	15.4	32.7	32.7	31.0
교 통 세	61,494	15,521	-6.4	25.2	27.5	30.7
특별회계국세	99,668	24,530	6.7	24.6	26.7	32.1

주: 1) 최근 5년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진도비

- 진도비도 32.9%로 최근 3년 평균(35.3%)에 미달하고 있으며
- 세수목표 2조원 조정 후의 예산증가율과 진도비로 비교해도 낮은 수준
 - 2조원 조정 후 예산증가율 : 10.8%(일반회계 : 8.7%)
 - 2조원 조정 후 진도비 : 33.8%(일반회계 : 35.0%)

〈 금년 세수가 부진한 이유 〉

- 당초 예산편성시 1997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보았으나
- 현재까지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더욱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재

(단위 : %, %포인트)

	1996 예산(A)	1996 실적(B)	(B-A)	1997 예산	1997 전망
경장성장률	12.7	10.8	-1.9	11.3	10 내외

(단위 : %)

	1994	1995	1996	1997 1/4분기
수출단가지수 ¹⁾	98.9	106.2	92.6	약 85 내외
재고증가율 ²⁾	6.7	14.9	14.5	13.4

주: 1) 수출단가지수 = 당해연도의 수출품가격/1990년도의 수출품가격
 2) 당해연도 연말기준임.

- 고가 늘어남에 따라
- 매출액이나 생산이 증가했다라도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 실제 세수에는 성장률 둔화 이상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그 결과 특별소비세 등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세목과 지난해 영업실적의 영향을 받는 법인세·소득세 등이 부진하여 금년 세수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임.

1996년 상장법인 결산결과(561개사)

(단위 : 억원, %)

	1995(A)	1996(B)	(B/A)
당기순이익	98,928	33,705	-65.9
매출액대비이익률	3.0	0.88	-70.7

〈세목별 세수분석〉

- 소득세는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하였음.
- 이는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소수가족근로자에 대한 추가경감조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약 4천억원)가 금년 1~2월 세수에 반영되었고
- 경기부진에 따른 실업증가로 근로자수가 감소하며 임금상승률의 둔화로 누진감소효과가 발생한 데 기인함.
- * 1997년 3월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수는 526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되었음(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법인세는 1995년에 개정된 법인세율 인하효과

(30%, 18% → 28%, 16%)가 1996년 사업연도에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 경기하강국면의 지속, 주가하락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확대 등으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전년동기보다 31.7%나 감소하였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예산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 부가가치세 : 17.0%(예산증가율 : 10.9%)
- * 관세 : 15.4%(예산증가율 : 12.5%)

- 이는 주로 수출·설비투자의 감소로 인해 환급세액 증가율이 낮아지고 환율이 상승(예산환율 : 800원/달러 → 4월 누계환율 : 873.4원/달러)한 데 기인함.

○ 특별소비세는 경기의 영향으로 주요 과세대상품의 출하가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13.3% 감소함.

(단위 : 만대, 만톤, %)

	1996. 4	1997. 4	증감률
자동차	36.4	31.8	-12.9
LPG	55.5	51.3	-7.6
TV	78.5	71.4	-9.0
냉장고	53.8	48.7	-9.5

○ 교통세는 특히 세수비중이 큰 휘발유출고가 감소하고

(단위 : 만kl, %)

	1996. 4	1997. 4	증감률
휘발유	336.0	335.5	-0.2

- 납기연장으로 약 1,400억원의 납부가 5월 이후로 이연됨에 따라 작년보다 6.4% 감소하였음.

○ 주세는 맥주의 출고부진 및 금년부터의 세율인하 (150% → 130%)와 납기연장(약 1,3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7% 감소함.

(단위 : 만kl, %)

	1996. 4	1997. 4	증감률
소 주	25.2	26.7	5.9
맥 주	64.7	59.5	-8.0

○ 증권거래세는 세율의 인하(0.3% → 0.15%)로 전년동기 대비 25.1% 감소함.

(단위 : %)

	1996. 4	1997. 4	증감률
거래금액	361,920	457,495	26.4

○ 농어촌특별세는 금년부터 법인소득분에 대한 농특세(법인소득 5억원 초과분의 2% : 약 4,580억원)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동기 대비 49.6% 감소함.

II. 5월까지의 세입실적 (한국은행 국고집중계정)

○ 5월까지의 국세실적은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행 국고집중계정에 따르면 5월까지의 세입(일반회계국세 및 세외수입 포함)은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한 25조 6,660억원으로 추산됨.

(단위 : 억원, %)

	1997 예산	5월까지 실적
일반회계세입(세외수입포함)	660,485	256,660
1996년 실적대비 증가율	12.1	1.6

* 한국은행 국고집중계정(한은 국고금취급규칙 제5조 1항) : 국고금의 수급이 정리되는 계정으로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목간 구분없이 일반회계세입총액만 집계됨.

III. 1997년 국세전망

○ 아직 5월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실적이 집계되지 않았고, 7월 25일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어 금년 세수를 정확히 전망하기는 어려우나

- 지금까지의 실적과 최근 몇 년간의 진도추이 등에 비추어 볼 때 「2조원 수정세수목표(72조원 수준)」 이상의 세수결합이 예상됨.

〈참고〉 1997년 4월까지의 국세실적(잠정)

(단위 : 억원, %)

	1997예산	1997년 4월까지 실적		진도비		
		1996대비 증감률	1997예산대비	납기연장분 포함시 ¹⁾	3년 평균 ²⁾	
총 국 세	740,003	235,596	-0.5	31.8	32.9	35.3
1. 일반회계	640,335	211,066	-1.2	33.0	33.9	35.8
2. 특별회계	99,668	24,530	6.7	24.6	26.7	32.1
내 국 세	547,116	183,305	-2.0	33.5	34.6	36.5
(일반회계)	(519,075)	(176,109)	(-2.2)	(33.9)	(34.8)	(36.6)
- 소득 세	172,217	39,175	-5.6	22.7	22.9	25.4
- 법 인 세	99,707	26,193	-31.7	26.3	30.3	39.5
- 상 속 세	11,753	3,325	14.6	28.3	28.8	29.1
- 부가가치세	186,192	88,480	17.0	47.5	47.6	44.9
- 특별소비세	33,543	10,250	-13.3	30.6	30.9	33.6
- 증권거래세	3,292	861	-25.1	26.2	26.2	33.0
- 주 세	20,544	4,683	-25.7	22.8	29.1	31.0
- 전 화 세	7,498	2,514	25.7	33.5	33.5	32.2
교 통 세	61,494	15,521	-6.4	25.2	27.5	30.7
관 세	59,723	19,536	15.4	32.7	32.7	31.0
교 육 세	58,396	13,731	56.8	23.5	24.5	25.8
농 특 세	13,230	3,602	-49.6	27.2	29.3	48.1

주: 1) 5월 이후로 납부가 지연된 납기연장분 8천억원 감안시 진도비

2) 최근 5년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진도비



독립공채상환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국고국 국고과에서 발표한 「독립공채상환」의 내용입니다.

I. 발행경위

-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중국 상해와 하와이 등 미주지역에서 발행

II. 독립공채상환이 가지는 의미

- 독립공채는 다른 국채나 공채와 달리 일제강점시절 이국땅에서 또는 국내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애국심을 다소나마 보상하는 뜻이 있음.

- 특히 중국 상해 발행 독립공채에 써어 있는 문안을 보면 “조국이 독립된 후 5년에서 30년내에 상환한다”고 되어 있어 당시 독립 공채 매입자는 후일 상환을 받겠다는 뜻보다는 조국독립을 염원하는 마음 하나로 독립공채를 산 것임을 알 수 있음.

III. 그간의 상환실적

- 1952~1953년에 1차로 독립공채를 「국무회의」의결로 상환했으며
- 당시 상환금액은 131만 6천원(미화 2만 2천달러 상당)이었음.

- 1984~1987년에는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국내 소지자 및 해외(수교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독립공채를 상환
- 당시 23건 신고에 상환금액은 4,299만원이었고 그 중 미국 등 해외거주 신고자는 5건이었음.

IV. 금번 독립공채 신고현황 및 상환계획

- 신고자 및 신고건수 : 총 3건 37매
- 이종림 : 중국 조선족
- 장기철 : 멕시코 교민
- 홍사단 미주본부 (미국 로스앤젤레스)

- 적격여부
 - 적격자 : 이종립
 - 상환계획 :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광복절인 8·15 전에 상환
 - 비적격자 : 장기철 / 미주 흥사단
 - 멕시코와 미국은 독립공채상환특별법상 1984~1987년 기간중 신고 및 상환 대상임.
- 비적격 공채 소지자에 대한 상환방안 검토

상환 예상액

	원금	상환액	상환방법
이종립	310원	353만원	예산지급
장기철	40달러	180만원	현행법상지급불가
흥사단	9,320원	1억 800만원	현행법상지급불가

- 독립공채상환은 숭고한 민족정신에 대한 보상인바 「독립공채상환 특별법」상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법을 개정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독립공채를 사신 분들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상환된 독립공채의 처리
- 신고제출된 독립공채 중 일부는 독립기념관과 상해 임시청사에 전시토록 하여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함.

V. 참고사항

1. 신고자 이종립씨의 경우

○ 동인(同人)의 할아버지가 일제침략시 중국 연변지역으로 이주해 와 당시 독립운동의 거점 중의 하나였던 중국 간도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으로부터

○ 1919년부터 1921년까지 3년간 독립공채를 지속적으로 사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사망하면서 그 중의 일부를 가보로 후손들에게 남긴 것으로 추정

○ 당시 중국문화혁명 때 독립공채 소지자들이 신변 위협으로 대부분 소각한 것으로 추정되나 동인은 끝까지 가보로 잘 보존하여 왔음.

2. 장기철씨의 경우

○ 멕시코 초기 이민자인 이성로씨가 원 소지자이며 장씨는 동인의 손자사위임.

3. 흥사단 미주본부

○ 미주지역 흥사단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 자료정리 중 발견 신고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에서 6월 20일에 발표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의 내용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1996. 12)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배합사료를 영세율로 구매할 수 있는 농가가 영세축산농가에서 모든 축산농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축산농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 개인인 농민과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외에
 - 축산농민으로 구성된 축산법인(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출자자의 3분의 2 이상이 농민 또는 상근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과
 - 농민에게 위탁사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계열화법인 및(30대 대기업은 제외하며, 영세율의 적용은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함)
 - 생산자단체인 농협·축협 및 중앙회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음.

(營漁組合法人)과 생산자단체인 수협(어촌계 포함) 및 중앙회도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였음.

- 이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던 “개인인 축산농민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 법인” 이외에 이들 법인이 추가됨으로써
 - 약 70~80억원의 추가 세금감면효과가 있게 되고 해당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료가격의 인하(9.1%)를 통해 생산비가 절감(평균 4%)되는 효과가 있게 됨.

* 생산비 절감 추정효과 : 비육우 1.8%, 젖소 3.5%, 돼지 4.5%, 육계 4.8%, 계란 5.6%

○ 아울러 수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한 · EU WTO 주세협약의 결과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에서 발표한 「한 · EU WTO 주세협약의 결과」의 내용입니다.

○ EU측은 지난 4월 4일 우리나라의 주세율체계가 소주와 동종관계(예: 보드카) 또는 경쟁관계(예: 위스키)에 있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차별적이므로 GATT 제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하였음.

- 우리측 수석대표 : 이근경(재정경제원 재산소비세 심의관)
- EU측 수석대표 : Ian Wilkinson(주제네바 EU대표부 공사)

우리나라의 주세율

(단위 : %)

	주 세	교육세
소 주(25°)	35	주세의 10
위스키(40°)	100	주세의 30

- GATT 제3조 제2항 내용

- 자국상품과 동종 상품에 대한 차별금지(첫째 문장)
- 자국생산 보호 목적으로 직접경쟁 또는 대체가능한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금지(둘째 문장)

○ 이에 따라 우리측과 EU측은 1997년 5월 29일 (목요일) 제네바에서 주세문제에 관하여 오전과 오후에 걸쳐 WTO 양자협의를 가졌음.

○ 우리측은 소주와 위스키가 직접경쟁 · 대체관계에 있다는 일본에 대한 WTO 패널 결정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나, 가급적 양자타결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DSU(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정신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 · 보드카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였음.

- 우리측 제시안

-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 1도당 2.5%로 함. 이에 따라 알콜도수가 40°인 위스키는 현행대로 100%(2.5%×40)로 하고, 25°인 희석식 소주는 현행 35%에서 62.5%(2.5%×25)로, 40도인 증류식 소주는 현행 50%에서 100%(2.5%×40)로 하며

• 주세분교육세는 현재 소주는 10%,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등은 30%로 되어 있는데 이를 20%(또는 30%)로 단일화되 이와 같은 세율개정은 향후 3~4년 내에 단계적으로 이행함.

- 이에 대하여 EU측은 우리측의 협상안이 새로운 제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주류와 국산주류간의 세부담상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어 WTO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 검토 후에 EU측의 입장을 우리측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였음.
- 또한 29일 협의에서는 EU와 제3자 참여를 한 미국·캐나다로부터 우리나라의 주세제도에 관한 질의와 우리측의 답변이 있었음.

협상안에 따른 세율조정 내용

(단위 : 도, %)

	알콜도수	주세율		주세분 교육세율	
		현행	협상안	현행	협상안
소 주					
회석식	25	35 (1.4)	62.5(2.5)	10	20 또는 30
증류식	40	50(1.25)	100 (2.5)	10	
위 스 키	40	100 (2.5)	100 (2.5)	30	
브 랜 디	40	100 (2.5)	100 (2.5)	30	
보 드 카	40	80 (2.0)	100 (2.5)	30	
리 큐 르	35	50(1.43)	87.5(2.5)	10	

주: () 안은 알콜 1°당 세율

199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특례자에게 표준신고율 미적용

※이 자료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6월 20일에 발표한

「199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특례자에게 표준신고율 미적용」의 내용입니다.

1. 「표준신고율」이란?

- 표준신고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매 과세기간 단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기대비 매출신장률로서
- 업종별·지역별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중의 생산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표준이 될 만한 사업신장률을 산출하여 정함.

2. 그동안의 표준신고율제도의 운영

- 1977년 부가가치세제도의 도입·시행 이래 표준신고율 제도를 운영하여 과세특례자는 표준신고율에 의해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로 추정하여 경정을 배제하여 왔음.
- 국세청에서는 매기별로 표준신고율을 제정, 신고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표준신고율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3. 그간의 표준신고율 적용시 문제점

가. 사업자간 과세 불공평 초래

- 실제 사업실적이 국세청에서 정하는 매출신장률인 표준신고율보다 낮게 증가하는 영세사업자라도
- 최근 3년 평균 18% 이상 증가한 표준신고율에 의한 신고로 실제 매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당초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매출액 증가가 표준신고율보다 더 높은 사업자라도 계속적으로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 표준신고율 이상 신고시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규정에 따라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탈세를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 과세상의 불공평 현상을 가져오게 됨.

나. 실제 사업실적과 관련없는 신고가 이루어짐

-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중의 실제 사업실적에 맞추어 신고하여야 하나 표준신고율에 의한 신고시
- 실제 사업상 매출실적이 전기에 비해 하락하였을 경우에도 일정률 이상 상승된 표준신고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실적과 괴리된 신고가 이루어짐.

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감안하여 이번 신고시에는 표준신고율 적용을 폐지하여 자율신고의 기반을 확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하고자 함.

4.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표준신고율 적용 없음

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남

-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별로 각각의 실제 사업 실적에 맞추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 실제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비율에 의해 신고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5. 이번 신고시 표준신고율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가. 이번 확정신고시 영세한 사업자에게

- 더욱 철저히 부가세 신고를 안내함
- 이번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자가 자기의 실제 사업 실적에 맞추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 최근의 경기동향 등에 비추어 특별한 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일절 배제할 계획임.

나. 자율신고에 역행

- 부가가치세제는 사업자의 자율신고가 근간이 되는 세제이나 표준신고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자율신고가 제한되고 타율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일률적으로 증액신고를 강제하는 사례 방지

- 이에 따라 불황 또는 개별 업체별 사정에 따라 종전보다 매출액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상승된 표준신고율에 따라 매출액을 실제보다 늘려서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됨.

다. 계속적인 증액 신고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

- 표준신고율이 생산자 출하지수, 물가지수 등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제정되고는 있으나, 실제 체감되는 경기불황 상황 등을 신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 경기의 호·불황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액신고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자들의 불만 요

다. 자율신고 기반의 확대

- 표준신고율제도로 인해 사업자의 자율신고가 일부 제한되고 부분적으로 타율적인 신고가 행해져 왔으나 동 제도의 폐지로 이제부터는 완전한 사업자 자율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

※이 자료는 국세청 징세심사국 납세지도과에서 6월 25일에 발표한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의 내용입니다.

I. 의의 및 배경

1. 의의

-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 제도란
-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관할세무서(개인의 경우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시행배경

- 그동안 납세증명서의 발급관서를 관할세무서로 한정하고 있어 원거리 개인납세자나 지점법인이 증명을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 금년부터 국세통합시스템의 시행으로 전산발급 증명민원에 대하여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세징수법의 개정(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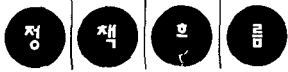
3. 1 시행)으로 납세증명서의 발급세무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 납세증명서에 대하여 전국 온라인 발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 그동안 제공하여 오던 납세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납세자 편의위주의 민원행정을 전개하기 위함.

II. 대상증명 및 시행일자

1. 대상증명

- 납세증명서(단, 해외이주용은 제외)를 전국 온라인 발급 대상증명으로 함.
- 납세증명서는 현재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전산발급비율이 95% 이상으로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증명임.
- 전산발급 대상(11종) 전체 증명발급 건수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음.
- 다만,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처리기간 10일)는



- 수동발급증명으로 전국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함.
-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의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 납세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거나,
 - 해외에 이주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임(근거 :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제6조).

2. 시행일자

1996년간 납세증명서의 발급건수
(단위 : 천건, %)

	1996 발급건수	비율
전산발급 대상증명(11종)	4,609	100.00
납세증명서	1,520	33.0

주 : 납세증명서는 납세완납 및 미파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

- 1999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III. 기대효과

-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관할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 도모
- 특히 개인납세자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인근세무서에서, 그리고 지점 법인의 경우 지점소재지 인근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민원인의 편의도모에 크게 기여함.
- * 증명신청 및 발급 세무서 비교
- 개인납세자
 - 현행(시행전)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 개선 : 전국 세무서

- 법인납세자
 - 현행 :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 개선 : 전국 세무서

○ 한편 동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편리한 어느 세무서에서나 증명을 발급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절약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IV. 전국 온라인 발급 요령

1 신청 및 접수

- 민원인(법인포함)은 납세증명서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증명발급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식은 「민원서류전산발급신청서(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함(현행과 같음).
- 위 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관할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함.

2. 처리(증명발급)

- 접수된 증명신청서는 국세통합시스템상 민원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전산접수 입력 및 증명민원 전산발급 화면을 이용하여 전산접수 후 증명을 발급함(현행과 같음).
- 각종 전산장애 등으로 증명의 전산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장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동으로 증명을 발급함.

- 다만, 증명내용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증명을 발급받도록 납세자에게 안내

○ 증명발급 세무서로부터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장은 즉시 증명내용을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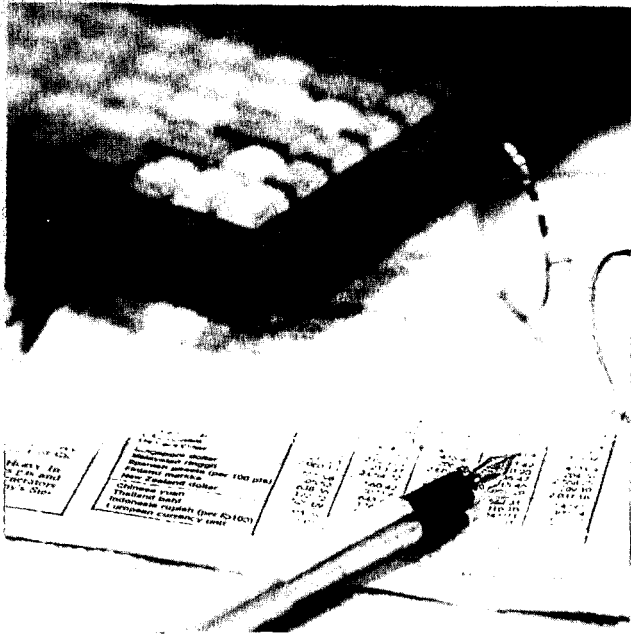
- 그 내용을 「납세증명서 전화경유부(위 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함.

○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서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지 세무서장 명의로 증명을 발급하는 것임.

V. 납세자 유의사항

○ 금융기관(은행)에서 세금을 수납하는 경우 수납자료(영수필통지서)가 세무서에 송부되어 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입력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7일 정도 소요되고 있어, 이 기간에는 전산에 의하여 세금납부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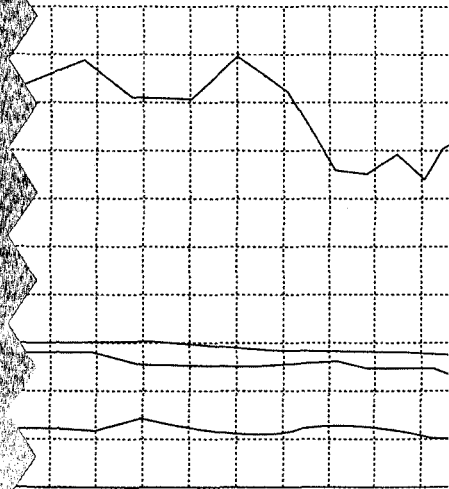
-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최근 세금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납부영수증을 지참할 필요성이 있음.



재정 통계

주세 관련 통계

1. 주세율의 변천
2. 주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3. 주류별 주세 부과
4. 주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1. 주세율의 변천

	1949.10.21 (원/석)	1950.4.28	1954.3.31 (환/석)	1954.10.1	1957.1.1	1961.1.1	1962.1.1
주 정	40,000	40,000	40,000	5,085	10,200	23,000	23,000
탁 주	800	1,200	400	400	400	400	3,000
약 주	800	12,000	6,100	2,500	5,000	7,500	30,000
명 약 주							
청 주				11,000	8,800	21,000	32,200
특 급					17,000	31,000	108,000
1 급	30,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2 급	20,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합 성 청 주				5,600	12,500	12,500	26,500
1 급	20,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 급	18,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맥 주	20,000	25,000	15,500	15,500	18,000	32,500	97,500
합 성 맥 주				5,500	8,500	20,000	60,000
과 실 주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5,500	5,500
증 류 식 소 주	11,000	18,000	3,300	1,500	3,000	9,300	23,250
회 석 식 소 주							6,400
위 스 키							
브 랜 디							
고 량 주	25,000	30,000	14,400	8,100	9,450	25,000	62,500
기 타 증 류 주	13,350	40,000	13,350	3,200	13,350	16,000	13,350
기 타 재 제 주	18,000	18,000	4,500	2,100	2,100	12,500	23,900
기 재 주 1							
기 재 주 2							
인 삼 주							
인 삼 주 1							
인 삼 주 2							
기 타 양 조 주	15,000	15,000	5,400	3,600	8,100	18,000	54,000



1. 주세율의 변천(계속)

	1962.8.18 (원/석)	1966.1.1 (원/kl)	1968.1.1 (원/kl)	1972.1.1	1973.2.26	1974.1.14	1975.1.1
주 정	2,300	49,350	49,350	49,350	49,350	49,350	49,350
탁 주	240	1,470	1,470	10%	10%	10%	10%
약 주	3,000	19,960	20,000	60%	60%	60%	60%
명 약 주					80%	100%	100%
청 주	3,220	58,520	80%	100%	100%	120%	120%
특 급	8,640	62,700					
1 급	3,500	35,000					
2 급	2,500	25,000					
합성청주	2,650	20,570	60%	65%	65%	65%	65%
1 급	2,500	25,000					
2 급	2,000	20,000					
맥 주	7,800	77,830	100%	120%	120%	150%	150%
합성맥주	6,000	59,870	90%	100%	100%	100%	100%
과 실 주	550	3,660	20%	25%	25%	25%	25%
증류식소주	2,325	18,040	30%	35%	35%	35%	35%
희석식소주	640	4,970	30%	35%	35%	35%	35%
위 스 키		22,000	150%	160%	160%	250%	200%
브 랜 디				100%	100%	160%	150%
고 량 주	6,250	54,970	90%	110%	110%	110%	110%
기타증류주	5,750	13,350	40%	50%	80%	80%	80%
기타재제주	2,390	15,500					
기 재 주 1			30%	35%	35%	35%	100%
기 재 주 2			40%	50%	50%	50%	40%
인 삼 주							
인삼 주 1							100%
인삼 주 2							50%
기타양조주	5,400	44,900	90%	110%	110%	110%	110%

1. 주세율의 변천(계속)

	1991.7.1	1994.1.1	1996.1.1	1997.1.1
주 정 (원/kl)	57,000(95°)	57,000(95°)	57,000(95°)	57,000(95°)
탁 주	5%	5%	5%	5%
약 주 류				
약 주	30%	30%	30%	30%
청 주	70%	70%	70%	70%
맥 주	150%	150%	150%	130%
과 실 주	30%	30%	30%	30%
소 주 류				
증류식소주	50%	50%	50%	50%
희석식소주	35%	35%	35%	35%
혼합식소주	35,40,45,50% (혼합물 기준)	35,40,45,50% (혼합물 기준)	35,40,45,50% (혼합물 기준)	35,40,45,50% (혼합물 기준)
위 스키 류	150%	120%	100%	100%
브 랜 디 류	150%	120%	100%	100%
일반 증류주				
위스키 원액 불포함	80%	80%	80%	80%
위스키 원액 포함	80%	100%	100%	100%
리 큐 류	50%	50%	50%	50%
기 타 주 류				
알콜 25° 이상	80%	80%	80%	80%
알콜 25° 미만	50%	70%	70%	70%
위스키 20% 이상 함유		120%	100%	100%
요리전용주		10%	10%	10%

- 주 : 1. 1954년에는 제1차 통화개혁으로 인해 매 '1석당 원' 단위였던 것이 매 '1석당 환' 단위로 바뀜.
 2. 1962년 8월 18일부터 제2차 통화개혁으로 인해 '환/석' 단위가 매 '1석당 원' 단위로 바뀜.
 3. 1966년부터는 '원/석' 단위가 '원/kl' 단위로 바뀜.
 4. 1968년에 주정, 탁주, 약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에 대한 과세가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뀜에 따라 세율단위로 '원/kl'에서 '%'로 바뀜.
 5. 인삼주1과 기타재제주1 그리고 인삼주2와 기타재제주2는 각각 주세율이 80% 이상 또는 미만 주류를 원료로 사용한 것임.
 6. 석 = 144kg(1.8가마)임.
 7. 단위가 %인 경우는 종가세를 의미함.
 8. 방위세
 1975. 7. 16 개정: 주세액의 10%(단 탁주, 주정 제외, 주세율 100% 이상 주류는 20%)
 1979. 12. 28 개정: 주세액의 10%(단 탁주, 주정 제외, 주세율 100% 이상 주류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주류는 30%)
 1990. 12.31 폐지
 9. 교육세
 1981. 12. 5 개정: 주세액의 10%(단 탁주, 약주, 소주는 제외)
 1990. 12. 31 개정: 주세액의 10%(단 탁주, 약주, 주정은 제외하되 소주의 경우는 95. 1. 1부터 시행, 주세율 80% 이상 주류는 30%)
 1993. 12. 31 개정: 주세액의 10%(단, 탁주, 약주, 주정은 제외하되 수주의 경우는 95. 1. 1부터 시행, 주세율 80%이상 주류는 30%)



2. 주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단위: 명, 백만원, %)

계정통계

	납세자수	예산액(A)	징수결정액(B)	부과액	수납액(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	3,648	3,768	3,830	3,767	-	-	103.3	103.3
1966	-	7,061	6,408	6,449	6,342	-	66	90.8	89.8
1967	-	8,068	8,119	8,236	8,105	-	14	100.6	100.5
1968	-	11,645	11,513	11,558	11,147	1	366	98.9	95.7
1969	-	16,369	16,038	16,262	15,967	2	68	98.0	97.5
1970	-	22,376	21,621	21,745	21,590	1	31	96.6	96.5
1971	-	31,355	27,605	24,419	27,536	-	70	88.0	87.8
1972	2,351	27,418	28,275	30,139	28,115	1	159	103.1	102.5
1973	2,095	31,558	34,695	38,266	34,039	-	656	109.9	107.9
1974	1,661	50,751	61,598	60,600	53,245	-	8,353	121.4	104.9
1975	1,627	88,600	83,551	83,874	81,422	4	2,125	94.3	91.9
1976	1,611	87,390	93,376	93,387	93,020	-	356	106.8	106.4
1977	1,572	128,778	123,258	123,261	123,249	-	9	95.7	95.7
1978	1,577	166,252	194,085	194,407	193,989	1	95	116.7	116.7
1979	1,564	245,720	278,143	278,584	265,848	-	12,295	113.2	108.2
1980	1,552	317,991	321,930	321,799	297,717	-	24,213	101.2	93.6
1981	1,536	387,313	375,089	375,262	374,761	2	326	96.8	96.8
1982	1,532	416,322	394,768	395,094	394,708	1	59	94.8	94.8
1983	1,531	488,346	441,431	440,808	441,027	-	404	90.4	90.3
1984	1,518	490,437	494,539	494,620	493,393	130	1,016	100.8	100.6
1985	1,504	537,109	501,986	516,051	501,187	586	213	93.5	93.3
1986	1,497	598,677	556,225	551,916	555,805	8	412	92.9	92.8
1987	1,482	638,237	581,603	618,663	581,501	-	102	91.1	91.1
1988	1,459	649,306	780,513	738,356	780,470	-	43	120.2	120.2
1989	1,458	838,691	893,821	900,672	893,033	-	788	106.6	106.5
1990	1,433	902,961	1,022,606	1,021,684	1,022,417	-	189	113.3	113.2
1991	1,414	1,058,092	1,145,947	1,166,260	1,145,342	8	597	108.3	108.2
1992	1,379	1,331,015	1,329,337	1,298,160	1,329,041	-	296	99.9	99.9
1993	1,363	1,550,042	1,367,788	1,372,332	1,367,588	-	200	88.2	88.2
1994	1,358	1,552,200	1,547,828	1,640,546	1,545,787	-	2,041	99.7	99.6
1995	1,352	1,722,900	1,828,568	1,840,362	1,824,513	1	4,072	106.1	105.9

주 : 부과액은 수입분을 포함한 것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주류별 주세 부과

(단위: 백만원)

	계	탁주	약주	맥주	청주	과실주	명약주	기타양조주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고량주	위스키
1965	3,830	526	146	1,454	540	1	-	1	171	259	9	-
1966	6,449	793	224	2,453	793	1	-	3	180	498	25	-
1967	8,236	926	201	3,254	1,065	5	-	1	68	728	32	-
1968	11,558	1,068	171	4,523	1,548	28	-	2	40	1,415	28	-
1969	16,262	1,434	193	6,830	2,297	62	-	-	36	1,997	57	-
1970	21,745	1,785	252	10,398	2,759	61	-	-	42	2,649	131	-
1971	24,419	2,082	274	11,791	3,164	74	-	-	60	3,075	145	-
1972	30,139	2,858	259	14,237	3,145	67	-	-	48	4,838	213	-
1973	38,266	3,234	318	18,801	3,983	68	90	-	40	6,195	248	-
1974	60,600	4,259	556	30,380	5,792	81	287	-	128	12,420	596	-
1975	83,874	5,289	598	43,004	6,656	201	439	13	19	18,823	1,073	-
1976	93,387	5,819	527	47,537	7,485	284	670	11	-	21,039	1,527	-
1977	123,261	6,000	469	64,904	9,607	575	940	16	-	25,815	2,220	1,327
1978	194,407	8,742	784	121,220	11,374	825	1,384	10	-	25,484	3,308	5,483
1979	278,584	9,771	470	179,094	13,492	1,089	2,572	-	-	34,589	3,748	11,192
1980	321,799	10,266	336	201,993	14,338	885	2,432	-	-	47,659	4,071	13,945
1981	375,262	13,095	353	228,021	15,051	969	2,661	-	-	63,460	3,464	21,137
1982	395,094	13,202	364	253,512	13,421	1,239	2,384	-	-	66,295	2,041	19,125
1983	440,809	10,449	338	289,034	14,325	1,516	2,315	-	-	69,347	2,443	25,636
1984	494,620	10,052	328	317,126	15,986	1,729	2,583	-	-	80,195	2,413	32,147
1985	516,051	10,828	328	334,240	16,186	2,290	2,825	-	-	80,613	1,935	33,519
1986	551,916	11,618	328	347,854	17,813	2,947	2,725	-	-	90,746	2,337	36,633
1987	618,663	11,583	315	391,100	20,433	3,967	3,281	-	-	95,726	2,970	46,075
1988	738,356	11,387	349	475,258	22,089	4,564	3,956	-	-	103,289	3,539	56,255
1989	900,672	11,438	314	581,241	26,823	4,881	4,689	-	-	111,243	4,687	69,978
1990	1,021,684	12,800	298	655,192	36,185	4,654	5,155	3	51	123,746	5,269	67,978
1991	1,166,260	9,783	357	799,175	37,281	4,776	1,956	4	538	128,135	2,625	68,432
1992	1,298,160	6,851	594	910,614	40,703	5,911	-	-	1,140	149,853	-	63,595
1993	1,372,332	6,537	789	948,039	43,637	4,976	-	-	2,873	170,849	-	78,153
1994	1,640,546	6,800	1,050	1,149,936	44,933	4,145	-	-	2,994	193,309	-	89,360
1995	1,840,362	6,114	1,253	1,283,729	45,272	3,941	-	-	2,041	192,202	-	102,663

3. 주류별 주세 부과(계속)

(단위: 백만원)

	주정	기타증류주	브랜드	합성청주	합성맥주	인삼주	기타재제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수입분	수시분
1965	628	1	-	30	24	-	41	-	-	-	-	-
1966	1,140	1	-	74	31	-	77	-	-	-	-	155
1967	1,721	1	-	69	-	-	156	-	-	-	6	4
1968	2,086	14	-	83	-	-	352	-	-	-	78	122
1969	2,596	13	-	68	-	-	505	-	-	-	162	12
1970	2,945	11	-	45	-	-	506	-	-	-	152	10
1971	3,049	25	-	39	-	-	505	-	-	-	120	16
1972	3,241	27	-	56	-	-	561	-	-	-	505	86
1973	3,348	39	-	70	-	-	785	-	-	-	990	56
1974	4,193	-	-	84	-	-	855	-	-	-	558	411
1975	5,668	-	18	19	-	177	1,161	-	-	-	674	42
1976	5,882	-	49	-	-	289	1,743	-	-	-	502	22
1977	6,439	-	140	-	-	292	3,313	-	-	-	1,113	90
1978	6,548	-	404	-	-	333	4,111	-	-	-	4,065	332
1979	6,154	-	848	-	-	444	8,574	-	-	-	6,531	15
1980	6,578	-	901	-	-	460	6,680	-	-	-	11,085	170
1981	7,251	-	532	-	-	383	9,597	-	-	-	9,125	162
1982	7,070	-	272	-	-	402	8,418	-	-	-	7,267	83
1983	4,417	-	193	-	-	495	8,360	-	-	-	12,428	-488
1984	6,311	-	200	-	-	449	9,730	-	-	-	15,319	51
1985	6,565	-	230	-	-	440	10,455	-	-	-	15,900	-304
1986	7,316	-	341	-	-	499	10,690	-	-	-	20,323	-252
1987	7,108	-	514	-	-	483	13,809	-	-	-	21,170	128
1988	7,090	-	675	-	-	517	16,048	-	-	-	32,824	516
1989	6,895	-	1,057	-	-	601	21,058	-	-	-	55,323	444
1990	7,196	-	877	-	-	686	27,674	-	-	-	73,838	82
1991	7,622	-	716	-	-	283	15,449	9,260	2,672	220	77,075	-99
1992	8,811	-	770	-	-	-	-	19,721	8,647	1,133	79,664	153
1993	8,605	-	733	-	-	-	-	9,170	13,275	764	83,926	6
1994	7,837	-	634	-	-	-	-	9,635	15,531	186	114,117	79
1995	7,364	-	90	-	-	-	-	6,844	20,562	168	168,026	9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주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단위: 건, 천원)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65	-	-	-	-	-	-	-	-	-
1966	3	-	3	3	-	2	1	1,273	-
1967	6	-	6	6	-	6	-	-	-
1968	9	-	9	8	2	6	-	-	1
1969	5	1	4	5	-	5	-	-	-
1970	12	-	12	12	3	8	1	3,889	-
1971	13	-	13	13	6	3	4	172	-
1972	26	-	26	23	1	21	1	14	3
1973	17	3	14	17	1	11	5	1,254	-
1974	41	-	41	40	5	24	11	2,442	1
1975	3	1	2	2	2	1	-	-	-
1976	-	-	-	-	-	-	-	-	-
1977	1	-	1	1	-	1	-	-	-
1978	3	-	3	3	1	2	-	-	-
1979	1	-	1	1	-	1	-	-	-
1980	4	-	4	4	-	4	-	-	-
1981	-	-	-	-	-	-	-	-	-
1982	3	-	3	3	-	2	1	29,197	-
1983	-	-	-	-	-	-	-	-	-
1984	1	-	1	1	-	1	-	-	-
1985	1	-	1	1	-	1	-	-	-
1986	7	-	7	7	-	7	-	-	-
1987	1	-	1	1	-	1	-	-	-
1988	-	-	-	-	-	-	-	-	-
1989	-	-	-	-	-	-	-	-	-
1990	-	-	-	-	-	-	-	-	-
1991	-	-	-	-	-	-	-	-	-
1992	-	-	-	-	-	-	-	-	-
1993	-	-	-	-	-	-	-	-	-
1994	1	-	1	1	-	1	-	-	-
1995	2	-	2	2	-	2	-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